

碩士學位論文

#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昌君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梁 太 燮

2008年 2月

#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昌君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2月 日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梁 太 燮

梁太燮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8年 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 - 目 次 -

第 1 章 序 論 .....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	1
第 2 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	2
第 2 章 海洋管轄權의 基本內容 .....	4
第 1 節 國家의 管轄權 .....	4
1. 概 念 .....	4
2. 根 據 .....	5
3. 沿岸國의 海洋管轄權 認定 .....	5
第 2 節 沿岸國의 權利와 制限 .....	6
1. 沿岸國의 權利 .....	6
2. 沿岸國 權利의 制限.....	7
第 3 章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現況 .....	12
第 1 節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意義 및 特性 .....	12
第 2 節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類型 .....	16
1. 海上 強力犯罪 .....	16
2. 기타 海上犯罪 .....	22
第 3 節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 活動動向 .....	31

1. 動 向 .....	31
2.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環境的 要因 .....	33
第 4 節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 發生推移.....	36
1. 國際性 犯罪發生 .....	36
2. 外國人 犯罪團束 .....	44
<b>第 4 章 環境變化에 따른 海上犯罪의 展望 및 國家別 團束機關.....</b>	<b>47</b>
第 1 節 國際社會 環境變化 推移 .....	47
1. 인터넷 등 情報通信技術의 發達 .....	47
2. 東유럽 體制變化.....	49
3. 유럽의 脫 國境化 .....	50
第 2 節 國家別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 團束機關 .....	50
1. 日本 海上保安廳 .....	50
2. 中國 公安部 .....	56
3. 美國 沿岸警備隊 .....	58
4. 러시아 國境守備隊 .....	59
<b>第 5 章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 管理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b>	<b>62</b>
第 1 節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管理 問題點 .....	62
1. 漁業協定の 管轄權 .....	62
2.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 搜查機關의 役割 .....	62
3. 搜查共助體系의 限界 .....	66

第 2 節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管理에 대한 改善方案 .....	67
1. 漁業協定 管轄權行事의 根據마련 .....	67
2. 國際 海上犯罪 專擔機關 新設 및 搜查協力關係의  강화 .....	69
3. 科學搜查機法 도입과  우수한 外事警察 育成 .....	71
4. 海洋警察廳 外事警察 機能 強化 .....	75
5. 國際테러 豫防活動 強化 .....	76
6. 國際刑事 司法共助體制 強化 .....	77
第 6 章 結 論 .....	80
參考文獻 .....	82
ABSTRACT .....	85



## - 表 目 次 -

<표 1> 일본 해상보안청 마약사범 적발현황 .....	23
<표 2> 총기류 사범 적발현황 .....	27
<표 3> 중국어선 불법조업 유형별 위반사례 .....	30
<표 4> 내·외국인 출입국현황 .....	33
<표 5> 국적별 외국인 체류 현황 .....	34
<표 6>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	35
<표 7> 해양 범죄현황 .....	37
<표 8> 인권유린사범 유형별 단속 실적 .....	38
<표 9> 해상밀입국사범단속 현황 .....	40
<표 10> 최근 해상밀수사범검거 현황 .....	40
<표 11>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	41
<표 12>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현황 .....	43
<표 13> 선적지별 외국어선 나포 현황 .....	43
<표 14> 우리어선 외국수역 불법조업 피납 현황 .....	44
<표 15> 외국인 범죄단속 현황 .....	44
<표 16> 최근 10년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 현황 .....	45
<표 17> 지역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 현황 .....	45

<표 18> 해적 및 무장강도 인명피해 현황 .....	46
<표 19> 경찰청 해외 주재관 파견 현황 .....	65
<표 20> 외사경찰관 해외 교육 현황 .....	73
<표 21> 경찰청 외사경찰관 해외교육현황 .....	74
<표 22> 연도별 국제공조형사 현황 .....	78
<표 23> 유형별 형사공조 현황 .....	78

- 圖 目 次 -

<그림 1> 외국 불법조업어선 검거현황 .....	42
<그림 2> 일본 해상보안청 조직도 .....	52
<그림 3> 일본 해상보안청 해상범죄 송치건수 .....	55
<그림 4> 중국公安部조직도 .....	57
<그림 5> 미국 연안경비대 조직도 .....	59
<그림 6> 러시아 국경수비대 중앙조직 .....	61
<그림 7> 해양경찰청 조직도 .....	64

# 第 1 章 序 論

## 第 1 節 研究의 目的

우리민족은 오랫동안 바다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오다 1960년대에 이르러 번영과 기회의 장으로 여기게 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된다. 인류는 바다를 통해 세계와 만날 수 있었고 바다는 또한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는 무한한 도전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바다는 지구표면의 5억 1천만km<sup>2</sup> 중 3억 6천만km<sup>2</sup>를 차지하고 있고 그 광대함과 심오함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거대한 힘의 원천으로 남아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물질을 공급하고 있다. 바야흐로 21C는 자원개발의 무한한 공간과 미래 생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해양 개척시대로 접어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바다에는 인간생활에 유용한 매우 많은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세계 각 국가들의 치열한 생존의 지대로 급부상하면서 이에 새로운 해양질서에 따른 해양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는 등 해양에서의 관할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해상범죄도 동서간의 냉전과 종교 간의 이념갈등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개방화 물결에 힘입은 인간교류 활동은 물론 해상교역을 통한 국익창출과 해상범죄이 목적과 이익을 얻기 위한 세력 확장차원에서 해적·테러행위 이외에도 외국적 어선의 EEZ에서 불법어로행위, 주변국의 조업선을 위장한 해상밀수·밀입국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해상범죄는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원인규명이 어렵고,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 외국적 선박에 대한 초기대응을 했으나 그 과정에서 허점이 있을 경우 국제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문검색 및 나포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해양주권 확립차원에서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는 억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과학



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즉 형사사법공조법 개정 등 미비한 법률을 정비하고 국제범죄를 관장하는 국가정보원, 해양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 수평적 대응체제 강화로 해양관할권 내에서 해상치안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편, 세계경제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韓·中 수교이후 개방화에 따른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해상범죄 활동환경이 크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인접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해상범죄 활동에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일본 등 주변국가에 이민, 밀항 등 연고를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현지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연고권을 이용한 국내 침투를 시도하기도 한다. 앞으로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 양상은 우리나라 바다를 중심으로 통신수단과 인터넷을 이용한 지능범죄, 북한 핵실험과 핵물질 거래, 장기밀매 등 대담한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을 통해서만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과 무역 수출입 97% 이상이 바다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절대 해상범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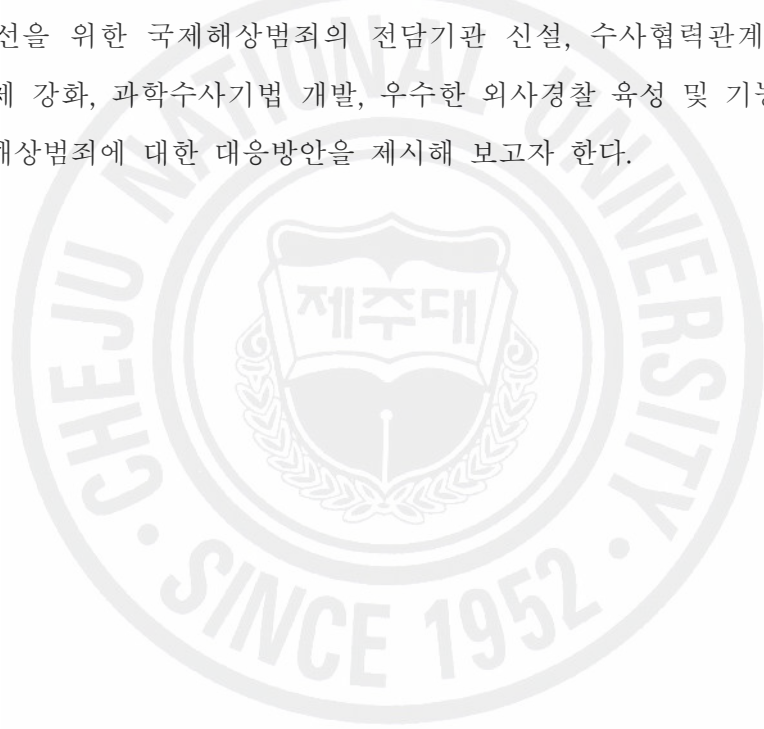
## 第 2 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라고 하면 단순한 해외도피 사범이나 외국인 범죄와는 구별되는 이른바 국제적인 중요성과 규모를 가지는 범죄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을 위해서 1) 해양관할권의 기본내용, 2) 이를 통한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 개념과 특징 정리, 3) 해상범죄 전망 및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인가 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해상범죄 예방단속에 국가정보원, 경찰청, 해양경찰, 관세청, 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서 유사업무를 관장하였고, 이에 따라 기관별 실적위주의 집행으로 국제해상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배포·공유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상기 문제점을 정리하고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통해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 수사·단속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고찰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해양에서의 국가 관할권의 기본내용과 관련하여, 한 국가가 국민의 재산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과 국가주권의 평등 그리고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연안국의 권리제한, 재판 관할권의 제한에 대해서 다뤄보았다. 제3장에서는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의 특성, 범죄의 유형을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 동유럽의 체제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국제해상범죄 양상을 고찰하고 끝으로 제5장에서는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 관리의 문제점에 따른 법적·제도상의 문제, 공조수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국제해상범죄의 전담기관 신설, 수사협력관계 강화, 국제사법 공조체제 강화, 과학수사기법 개발, 우수한 외사경찰 육성 및 기능 강화로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第 2 章 海洋管轄權의 基本 內容

### 第 1 節 國家의 管轄權

#### 1. 概 念

국가의 관할권이라 함은 한 국가가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그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주권·평등권·타국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 등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입법·행정·사법적 조치로 그 효력을 발생시키며 국가 관할권의 공간적 범위는 당해국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영역 이외에도 관할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당해국의 기본법이나 섭외 사법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복잡하고 명확성을 찾기 힘들다.<sup>1)</sup>

일반적으로 국가 관할권이란 국제법상 한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자국민과 자산을 통치할 수 있는 법적기초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관할권이란 자국민과 자산을 통치하는 데 있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즉 입법관할권(prescriptive jurisdiction)과 이러한 법률을 집행·강제할 수 있는 권한 즉 집행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으로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다.

국제법에서 관할권의 문제는 국가이익의 합당성과 같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는 국가와 경쟁적 주장을 하는 타국가의 이익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중심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장하는 이익에 대한 평가는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거래나 접촉관계 그 문제의 발생과 그 동안의 경과과정 그리고 그 사건으로 영향을 받는 자들이 당해국의 합당한 관심의 대상인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된다고 하겠다.

---

1)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1998, p. 150.

## 2. 根 據

동북아 해역은 연안국가간 거리가 그 어느 곳에도 400해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 획정 문제가 제기된다.<sup>2)</sup> 관할권은 또한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이 적용되는 가의 문제로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라고도 한다.<sup>3)</sup>

관할권 주장의 근거로서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자국 영토 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그 영토국의 주된 관심사라는 논리에 근거한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와 자국의 국적을 지닌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국적국의 당연한 이익을 근거로 한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비록 문제의 행위는 외국에서 일어났지만 자국과 자국의 국적을 지닌 사람과 물건을 보호할 권리·의무가 있다는 논거에 근거한 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노예무역이나 마약거래, 해적행위 등 국제적으로 비난대상이 되고 범세계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국제범죄행위에 대해 국제적 공동제재 방안의 일환으로 어떤 국가든 그러한 범법자를 수중에 두고 있는 국가는 그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거에 기인한 보편성의 원칙(Universal Principle)<sup>4)</sup>도 있다. 이밖에 타국과의 협정에 기인한 관할권(Agreement with Nations)에 의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21C에 들어서 국제관계의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해양력의 범주인 해양관할권은 넓은 의미의 해석이 보다 적합하다 하겠다.<sup>5)</sup>

## 3. 沿岸國의 海洋管轄權 認定

유엔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광활한 해양관할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온 영해의 범위가 국제 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되었고 그 대신 영해에서 다른 국가의 선박에

2) 백진형, “우리의 해양관할권과 그 관리방안”, 「해양 21세기」, 나남 출판사, 1998, p. 121.

3) 조충환·양건, 「스파 형법」, 박문각, 2004, p. 36.

4) 보편성의 원칙이란 범법행위는 국제사회 혹은 인류전체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그러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는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원칙에 의하여 모든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는 해적행위와 전쟁범죄라 하겠다.

5) 진형인, 「한국 해양력의 현주소」, 월간조선사, 겨울호, 2006, p. 25.

대해서는 무해통항권<sup>6)</sup>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대하여 1958년 제네바 대륙붕협약에서 규정했던 200m 수심기준 및 개발가능 기준을 버리고 ‘육지의 자연연장 및 거리기준’을 혼용하여 최대 350해리 내외로 확장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영해를 포함한 최대 200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관할권을 말한다.<sup>7)</sup>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주권행사 내용으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이 허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토와 다름없는 해역을 말한다.

이 수역에서는 이 수역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천연자원(생물, 무생물)의 탐사·개발·보존·관리, 해수·해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인공 섬 및 기타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sup>8)</sup>

## 第 2 節 沿岸國의 權利와 制限

### 1. 沿岸國의 權利

제3차 해양법협약 제2조는 「연안국은 영해의 해저와 하층토 및 상공에 있어서 주권을 향유하되, 동 협약과 기타 국제법에 따라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안국의 권리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서 육지 측의 모든 수역에 있어서 동수역의 상공, 수면, 수중, 해저 그리고 하층토에 이르기 까지 협약과 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완전한 권리를 향유 한다.<sup>9)</sup> 연안국의 영해에 있어서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연안어업 및 자원개발권 연안국은 영해에 있어서의 어업과 해상 및 지하의

6) 무해통항은 평시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선박이 타국영해에서 무해통항을 갖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정되어온 국제법의 원칙이다.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1998, pp. 285~289.

7) 해양법협약 제56조 1항 관련 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 행사 내용은 어업자원권,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해수 또는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존권, 해양과학조사권,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인공도서, 구조물의 시설 및 사용권이다.

8) 日本 海上保安廳, 「海上保安」, 日本 海上保安廳, 2006, p. 42.

9)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1998, p. 284.

자원개발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② 영해상공의 독점적 사용 선박과는 달리 영해상공에 대하여는 외국항공기의 무해통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연안 무역권 국가들은 항구간의 물자 및 여객수송을 자국민에게만 유보할 수 있다. 연안 무역(Cabotage)은 일반 국제법상의 확립된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통상 항해조약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연안무역이 내국민 대우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1956년 한·미 통상 항해조약 제19조3항)
- ④ 제3국의 전시 교전행위 금지 및 연안국이 전시중립인 경우에 교전국은 그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교전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선을 포획할 수 없다.
- ⑤ 연안국 경찰권은 항행, 위생, 관세, 이민, 해양오염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국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연안국 해양과학 조사권은 영해에 있어서의 배타적 해양과학 조사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타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없다.

## 2. 沿岸國 權利의 制限

영해에 있어서의 연안국의 권리<sup>10)</sup>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국제법의 제 원칙을 조건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안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반 국제법상의 예로는 무해통항권,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의 제한, 외국군함의 비호권 등을 들 수 있다.

### 1) 無害通航權(Right of innocent passage)

평시에 있어 모든 국가의 선박이 타국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온 국제법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해통항권은 운항선박 또는 그 선적국과 연안국간의 상호존중의 원칙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악용될 우려

10) 연안국은 영해에 있어서의 권리는 연안어업 및 자원개발권, 영해상공의 독점적 사용, 연안 무역권, 제3국의 전시교전행위금지, 연안경찰권, 해양과학조사권 등이다.

가 많다. 다시 말해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해역에서 통항이 무제한인 경우, 연안국에서는 모든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러한 안전통항이 불가능하거나 국가안보상 절대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사전 통보를 조건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반면에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자신의 통항으로 인하여 연안국의 평화·안전 혹은 공공질서에 직·간접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일단 통항로에 진입하면 오직 통항의 목적만을 위하여 신속하고 계속적인 항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나 원칙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국의 편의나 독립성,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 과학기술의 개발 등의 이유로 통항하는 사례가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제3차 해양법협약 제19조 2항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유해한 활동으로 열거하고, 그 중 어느 활동을 행하던 연안국의 평화, 공공 또는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 ①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존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유엔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한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
- ② 어떠한 종류의든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 또는 연습
- ③ 연안국의 방위 또는 안전에 유해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한 행위
- ④ 연안국의 방위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선전행위
- ⑤ 항공기의 선상발진, 착륙 또는 탑재
- ⑥ 군사장치의 선상발진, 착륙 또는 탑재
- ⑦ 연안국의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에 반하는 물품, 통화의 양하, 적하 또는 사람의 승선, 하선
- ⑧ 본 협약에 반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행위
- ⑨ 어로활동
- ⑩ 해양 조사 또는 측량활동의 수행
- ⑪ 연안국의 통신체계 또는 기타 설비, 시설의 방해를 목적으로 한 행위
- ⑫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행위

## 2) 裁判管轄權의 制限

상선 및 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형사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외국상선이 타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 기국과 연안국 사이에 관할권의 경합이 있게 된다. 이 관할권의 충돌은 관습과 조약에 의하여 조정되어 왔는데 대체로 기국의 관할권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계속 적용되며, 동시에 연안국의 관할권도 무제한은 아니지만 다소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조약은 보통 문제에 대한 국가 또는 그 밖의 능동적 국가법 주체간의 합의를 말한다.<sup>11)</sup> 영해 통과 중 외국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관련 연안국의 체포 또는 수사를 위한 형사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영해를 통과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내부규율은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국의 영사가 연안국의 원조를 요청하지 않는 한 기국의 법과 규칙에 따른다.

제3차 해양법협약 제27조 1항에 의하면 연안국의 형사 관할권이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칠 때,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의 공서를 교란할 때, 선박의 선장 또는 기국의 외교관이나 영사가 현지 당국의 원조를 요청할 때 그리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연안국은 내수를 떠난 후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 선박 내에서 체포 또는 수사를 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에 비해서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더 한층 강화시켜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수를 떠난 영해통과는 단순한 영해통과보다 연안국의 이익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외국의 항구를 떠나 내수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동 선박이 영해에 들어가기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범죄와 관련해서도 그 선박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해양환경 보호와 대륙붕에 관한 위반이 있을 경우는 예외이다.

### (1) 상선 및 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민사관할권

---

11) G. Fitamaurice, Some Problems Regarding the Formal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Symbolace Verzigl, 1958, pp. 157~158.



선박충돌의 민사재판권 관할은 형사재판 관할권이 국제해양법회의에서 논의될 때 문제되었고 1902년 함부르크 회의, 1904년 암스퇴르 회의, 1905년 리버풀 회의에서 그 조약(안)이 심의 되었다.<sup>12)</sup>

연안국은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선박내 사람에 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다. 또한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영해를 항행 중 또는 항행할 목적으로 선박 스스로가 인수 또는 부담한 채무나 책임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그 선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당해 선박을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선박이 영해에 정박 중이거나 또는 내수를 떠나서 영해를 통과중인 경우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밟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거나 또는 당해 선박을 압류할 수 있다.

#### (2) 공선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公船과 기국은 본질적으로 아주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연안국의 내수 또는 영해상의 외국공선(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지위는 대부분 상선의 지위와는 전혀 다르다. 일찍이 The Schooner Exchange v. MacFaddon 사건에서<sup>13)</sup> 자국항구에 입항한 외국의 공선 혹은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행사 자체의 원칙이 판시된 바 있다.

우선 타국가의 영해에 들어오는 외국 군함은 국제법상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뿐만 아니라 항행에 관한 연안국의 모든 법령을 준수할 것이 기대된다. 제3차 해양법협약 제32조는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책특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0조는 만약 외국 군함이 연안국의 법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안국은 당해 군함의 영해로부터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연안국의 어떠한 관할권행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기국은 영해 통

12) 장인식,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청교수요원 논문, 2005, p. 289.

13) 1823년 미연방법원에서는 프랑스가 미국인 소유선박인 The Schooner Exchange 호를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해군으로 편입시켰다, 그 후 동선박이 해난으로 미국에 입항하다 원소유자가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때 쟁점사항은 일국의 권위가 타국의 법원에 복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원은 일국의 영역관할권은 외국주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판시 하였다. 선박의 비호적 문제 일반상선은 정치범 또는 기타 망명자의 비호 처로 사용할 수 없다.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1998. p. 115.

항에 대한 연안국의 법령, 본 협약 및 기타 국제법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국제 책임을 진다. 외국 공선의 이와 같은 면제는 그 승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연안국에 상륙한 경우 그들에게도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공무와 관계없이 연안국에 상륙하여 범죄를 행한 승무원에게는 면제의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공선의 의제(fiction)적인 치외법권적 성격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38년의 Chung Chi Cheung사건<sup>14)</sup>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3) 선박의 비호권 문제

일반 상선은 정치범 또는 기타 망명자의 비호 처로 사용될 수 없다. 치안국의 지방관헌은 해양에 머물고 있는 외국상선에 승선하여 도망자나 망명자를 색출할 법적 권리가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만일 도망자나 망명자를 비호한 상선의 지휘자는 상선의 비호금지 규칙 위반으로 연안국 재판소에 소추될 수도 있다. 반면에 연안국의 정치적 망명자가 승객의 자격으로 제3국에서 외국상선에 승선하여 자국의 해항으로 들어온 경우 연안국은 그 외국상선에서 그를 체포할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부 견해로는 망명자가 자신을 체포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자국의 관할권내에 자발적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가정 아래, 그와 같은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외국공선의 비호권 문제는 아주 빈번히 발생하였다. 과거에는 보통 범죄인과 정치범 양자 모두에게 비호가 인정되었으나, 외국공선의 면제에 대한 이 같은 관대한 해석은 前세기 중엽부터 결정적으로 축소되어 오늘날에는 단지 정치범에 대한 관습상의 비호만이 인정되고 있다. 광범위한 비호권 인정에 전통적으로 반대해 온 미국정부의 경우 미국 공선의 비호를 정치범 생명이 폭도들의 폭력에 의하여 절박한 위협에 직면한 경우로 한정하여 왔다.

14)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3, No. 2(Apr. 1939), pp.376~384, CHUNG CHI CHEUNG v. THE KING, December 2, 1938,

### 第 3 章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現況

#### 第 1 節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意義 및 特性

##### 1.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意義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는 주제의 가치, 규모, 영향력, 과급과정 등을 전제로 국제 조직범죄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겠으나, 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해상범죄는 밀입·출국, 마약, 밀수, 불법총기류 밀반입, 선박탈취, 해상강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우리어선의 외국 피랍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해상범죄는 국제 범죄조직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과 공통점이 있으므로 국제성 범죄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해상범죄는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보호법익, 결과 발생 등의 요소가 2개국 이상 관련이 있는 범죄로서 범죄의 예방, 범인의 검거, 소추, 처벌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본다면, 해상범죄도 장소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와 유사하게 해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가능성 있는 국제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sup>15)</sup>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는 국제성 범죄로 외국인 범죄는 크게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특별법범은 해양오염방지법, 출입국관리법, 불법조업 외국어선, 기타 등 위반사범으로 구분된다. 일반 형법범 보다는 특별법범에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sup>16)</sup> 특별법범 유형 중에는 밀입국사범, 출입국사범과 외국 불법조업 어선의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이다.

##### 2.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特性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징 등으로 말미암아 일본,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15) 김종선, “해양관할권내 외국선박의 불법행위실태와 대응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25~28.

1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백서」, 2006

수많은 침략을 받아 왔다. 그리고 남북한 이념·갈등과 세계의 안보문제로 국제 범죄에 대한 대응이 다소 소홀해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미흡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국제 해상범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많은 학자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기관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거의 없고 해적에 관한 연구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해상범죄의 특성은 국제 조직범죄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 해양이라는 특수성과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추가되어 독특한 해양관할권내 국제성 해상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 1) 廣域性

해상에서 발생하는 국제 조직범죄의 양상은 광역성이다. 바다는 매우 넓고 광활하며 停滯되어 있지 않고 부단히 유동적이다. 바다는 바람과 파도의 변화가 심하고 조류의 흐름에 따라 해양은 지속적으로 움직여 물리적 현상을 자주 받는 곳이다. 국제 해상범죄의 활동으로 나포·검거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현장을 발견하는 시간과 현장 보존 그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관할권에서 국제 해상범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검거·나포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자연적 특성과 제약으로 선박을 나포하거나 수색·발견의 어려움은 물론 초동조치에 한계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광역성을 그 특징으로 갖고 있다.

#### 2) 手段成

바다는 육지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수단적 방법에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 즉 바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선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적행위, 노예수송, 마약밀매, 밀출국 등 불법행위가 모두 선박을 사용하거나 선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해양을 이용한 범죄단체들은 선박을 이용할 경우 비용의 저렴성과 대규모 운반능력 그리고 기상특보시의 연안 해안선 경비의 허술한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장소 혹은 수단으로서 선호하고 있다.

### 3) 波及 效果性

선박은 대량 수송수단이므로 단일사건이 대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9>와 같이 바다를 이용하다 검거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은 2003년 292명, 2004년 130명, 2005년 123명으로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고 있다.

이처럼 해상에서의 범죄는 육상의 범죄와는 달리 사건의 건수는 적으나 선박의 수송능력을 감안할 때 그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미치게 된다. 가령 밀입국 사범들이 한 척의 선박으로 다수의 밀입국자가 불법 입국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결국 밀입국 사범을 양산하게 된다. 즉 하나의 범죄가 양적으로 확대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예방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4) 進行性

해상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바다의 물리적 현상 등을 고려할 때 범죄행위가 종결되지 못하고 목적지 이동, 일의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상은 인간이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도구로서 범죄행위 발생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선상 살인사건이나 선상 강도사건들은 선상에서 범죄행위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밀입국 사건이나 밀수 등의 사건의 경우는 범행자체가 대부분 해상에서 완성되지 못한다.

해상은 육지와 달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도 해역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내법이 미치는 범위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밀입국 사범이나 밀수사범도 범행에 이용되는 선박이 최소한 영해나 접속수역에 들어와야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영해와 접속수역을 제외한 공해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내법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관련 법령 이외 적용 가능한 법령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상에서의 범죄는 진행상 중간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범행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에 해당된다.

#### 5) 需要의 敏感性和 流動性

해상에서 발생하는 마약밀거래, 총기류 밀반입, 해적행위 등 불법행위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인접 국가와의 외교관계에 따라 그 민감성이 크게 변화한다. 그동안 해양경찰에서 검거한 해상범죄 검거실적을<sup>17)</sup>보면 해상에서의 범죄는 국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해상치안 수요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불법행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관세범인 경우 행정법에 속하는 재정범이므로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범칙규정이 국내외의 경제상황에 따라 재산형 위주로 처벌하기도 하고 보다 중한 자유형으로 처벌하기도 하는 등 유동적이다. 이는 경제범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유동성에 따른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관세범은 국제성을 띠고 있으므로 더욱 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시대에 따라 관세범의 구성요건이나 형사처벌이 달라지고 새로운 개념의 관세범이 탄생하는가 하면 또 없어지기도 한다. 그것은 국내외 경제정책의 유동성에서 오는 것으로 그 시대에 맞게 범칙규정도 연구·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범과는 달리 관세범은 시간의 흐름 및 국내외 경제변동에 따른 경제정책 방향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극히 유동적인 경제범죄라 할 것이다.

#### 6) 知能性 및 專門性

해상 밀수범인 경우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이 타 범죄에 비해 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관세포탈과 같이 국가의 금지와 제한을 회피하려면, 어떤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제한하고 있는 물품이 무엇인가, 내외국의 물가사정은 어떠한가 그 물품 등에 대한 관세율은 어떠한가, 외국에서의 물품구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밀수대상 물품의 국내·외적 수요탄력성은 어떠한가, 밀수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이 필요한 것인가 등 국내외 광범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간의 물품 이동을 규제하고 있는 관세법규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국제거래에서의 상품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밀수범은 경제사범 중에서도 가장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이 강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묘히 합법을 가장하여 법인체 등에 의하여 자행될 때에는

17)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백서」, 2006 참조.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경제사범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는 국제성·조직성·강력성·복잡·다양성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상이라는 특성이 가미된 해상범죄는 광역성·수단성·파급효과성·진행성(미완결성)·수요의 민감성, 지능성 및 전문성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국제성 범죄와 구별되는 해상이라는 특이성을 가진 범죄만의 특성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범죄대책이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營利性과 組織性

은닉범 등은 경제적인 빈곤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연의 이성과 도덕성의 관념을 저버리고 법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빈궁범을 말하는 데 이에 반하여 밀수범은 단순한 경제적인 빈곤의 타개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범행하는 이욕범이다. 밀수를 자행하려면 밀수자금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범은 일반 절도범과 같이 곤궁을 동기로 범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부 관세범은 대부분 밀수자금을 제공하는 資金主와 밀수행위를 실제로 자행하는 행동대원의 분업형태로 파악할 수 있고, 마치 폭력조직과 같은 양상으로 철저히 계급화 되어 있다. 즉 위로는 밀수자금을 공급하는 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 밑에 구매, 운반, 양륙, 판매의 전체의 단계 등 각 단계별로 책임자가 존재함은 물론이고 말단의 행동조직까지도 그들 나름의 의리와 실력에 근거를 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8)</sup>

## 第 2 節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類型

### 1. 海上 強力犯罪

#### 1) 海上 強力犯罪의 概念

18) 부산지방검찰청, 「해양범죄백서」, 1997, pp. 453~456.

해상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등과 같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거나 조직폭력관련 범죄, 마약사범 등과 같이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강력범죄<sup>19)</sup>중 해상에서 벌어진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의 해상<sup>20)</sup>이란 영해상이든 공해상이든 불문하며 선박 위에서 벌어지는 범죄 대다수를 차지한다.

영해에서 벌어지는 해상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재판권의 행사 및 피의자 신병확보 등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적으나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전통적으로는 해적행위, 노예무역과 같은 범죄가 해상 강력범죄의 전형이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인류의 적(hostis humani generis)으로 간주하고 보편주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국가에 그 형사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적인 경향이다.<sup>21)</sup> 다만 현대사회가 문명화되고 해상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위와 같은 해적행위나 노예무역 등의 전통적인 강력범죄가 해상강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해상 강력범죄는 크게 육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해상이라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구성요건상 해상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두 가지로 구분된다.

육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해상이라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는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폭행치사, 중상해, 약취유인 등의 범죄, 사회의 질서유지에 중대한 침해가 되는 조직폭력관련 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 있고, 해상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는 해상강도<sup>22)</sup>, 해상강도 살인 및 해상강도 상해치사<sup>23)</sup> 해상강도상해 내지 치상<sup>24)</sup>등이 있다.

1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살인의 죄, 약취유인의 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정조에 관한 죄, 강도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강력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조충환·양건 앞의 책, p. 1210.

20) 해상은 육상의 상대적 개념인 동시에 호수나 하천 또는 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개념이므로 그 장소적 범주가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1) UN해양법협약 제105조에는 “모든 국가는 공해상 또는 여하한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장소에서 해적선, 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해 탈취되어 해적의 관리하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하여 해적행위에 관해 보편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22) 형법 제 341조 제1항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3) 형법 제 340조 제 3항 “해상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4) 형법 제240조 제2항 “해상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海上 強力犯罪의 特徵

### (1) 범죄의 은닉 내지는 축소 가능성

해상 강력범죄는 해상에 떠 있는 선박 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선박의 경우 선장의 지휘 하에 일사불란한 체계를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원들에게 엄격한 명령 복종관계를 요구하게 되므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목격자가 극히 제한되어 범행을 口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체적으로 범죄를 무마하거나 실제 내용보다 범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 (2) 국제성

페스카마호 범죄와 같이 선박의 국적, 소유자 및 관리자의 국적, 선원의 국적 등이 상이한 경우에 형사재판권의 경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같이 형사재판권 행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국제기구가 부재하다. 일반 원칙이 국제관행상 확립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국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 (3) 형사 관할에 관한 사례

####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

1996. 8. 2. 03:00경 공해상인 남태평양 피닉스 섬 북방 60마일 해상에서 한국인, 중국인, 인도네시아 선원 등 18명이 온두라스 국적 원양참치어선인 페스카마 15호에서 조업하던 중 각국 선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중국인 선원들에 대한 하선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은 중국인 선원 6명이 선상에서 칼, 도끼 등으로 한국인 선원 6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 중국인 선원 1명 등 총 11명의 선원을 집단살해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인 선원 6명이 치밀한 사전 모의에 의해 선원 11명을 집단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 후 선박을 강취한 전대미문의 해상강도사건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국적이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인도네시아였고 선박 국적이 온두라스였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각국에서 재판권을 주장할 경우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는 국제적 사건으로 공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강력사건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체를 해상에 유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폐쇄된 선박에서 목격자 중 일부를 살해하

려 하는 등 범죄 후 피의자들이 보이는 증거인멸 등 해상범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줄 뿐 아니라 국적이 다르지만 같은 민족인 한국인과 조선족 중국인과의 사이에 민족 통합의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또한 본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초동단계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재판권문제 등 국제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위주의 수사를 하는 등 해양경찰이 강력사건에 대응한 사례이기도 하다.

## ① 개 요

본건은 조선족 중국인 피고인 전재천 등 6명이 1996. 8. 2. 03:00경 사모아 동북방 80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피해자인 선장 최기택의 하선명령에 불만을 품고 한국인 선원들을 죽이고 선박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한국인 선장 최기택 등 11명을 칼 등으로 살해하거나 산채로 해상에 유기하여 살해한 후 선박을 강취한 사건이다.

## ② 본 사건의 특징

### ㉠ 전대미문의 강력사건

본 건은 중국선원들이 사전 치밀한 모의에 의하여 한국인 선장 등 6명, 범행에 협조하지 아니한 1명의 조선족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4명 등 총 11명의 선원을 집단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전대미문의 강력사건이다. 주범 전재천의 지휘 하에 선장, 갑판장등 살해 순서를 정해 두고 한국선원 7명을 차례로 불러내고 나머지 중국 선원들은 흥기인 칼과 도끼 등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계획에 따라 나타나는 한국선원들을 찌른 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해상으로 던져 살해하는 등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지극히 잔혹하였다.

특히 조기장 김창열의 경우 칼로 복부를 1회 찔러 도망가는 것을 따라가서 붙잡아 해상으로 던지려 하였으나 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현측 난간대를 양손으로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양손을 칼로 내리찍고 발로 걷어차 해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여주었으며, 제212 동원호 실기사 최동호의 살해의 경우, 인도네시아인 3명이 기관장 김신일의 살해 장면을 목격하게 됨에 따라 중국선원들이 이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동인들을 칼로 위협하였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 동인들이 최동호를 바다에 집어던지게 하는 잔인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㉔ 국제적사건

또한 본 건은 공해상에 있는 온두라스 국적이고 오만국 소유의 배인 페스카마호 선상에서 중국인 가해자가 한국인 및 인도네시아인을 살해한 사건으로 해상 재판권이 선박국인 온두라스, 가해자국인 중국, 피해자국인 한국 및 인도네시아인에 모두 있으므로 관련국가에서 본 건의 재판권을 주장할 경우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는 “국제적 사건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페스카마호를 보호하고 있던 일본으로부터 예상되었던 재판권 분쟁 없이 페스카마호 및 생존 선원들을 인도받는 일이 사건초기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 ③ 편의치적의 문제

편의치적선<sup>25)</sup>에 대하여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선박 소유자와 선박의 국적이 다르고 재정, 선박정비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관행보다 특혜를 받는 국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는데, 편의치적선의 기국은 사실상 선박 소유국이 아니라 기국에 의한다. 편의치적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편의치적국을 바로 국적국으로 본다. 따라서 관할권의 표준이 같지 않아 복잡하므로 그 표준을 기국에 의한다.

사실상 선박소유국은 형사 관할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편의치적선에 적용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 성능, 장비 등은 기준 이하이다. 또한 편의치적선의 대부분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부당행위에 대하여도 법적조치나 제한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회의에서는 편의치적선에 관한 기국의 관할권과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해사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선박충돌사건의 경우 편의치적국은 자국의 이익 또는 자국과 관계없는 국제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형사 관할권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결국 이러한 편의치적국의 소극적인 행동은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의 재판관할권을 영국 등 해양선진국에 독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편의치적선은 세계 해운의 약1/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해운상 관행에 해당한다. 편의치적제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해운관행이라면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피해당사국에서 실질적으로 책임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편의치적선의 경우 사실상 선박 소유국에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sup>26)</sup>

25) E.Osieke, *Flags of Convenience Vessls : Recent Developments*, AJIL, 1979, pp. 604~627.

26) 장인식,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청교수요원논문, 2005, pp. 296~297,

### 3) 海上 強力犯罪의 搜查管轄權

경찰관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구역 내에서 사건과 관련성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관할이 경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차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sup>27)</sup>

수사기관의 관할권은 토지관할과 사물관할로 나눌 수 있는데 토지관할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범질서 위반이면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른 법으로 특별히 제한할 경우 제약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선원법 위반죄로 근로계약위반은 검사 또는 선원근로 감독관만이 수사할 수 있고, 관세사건은 관세청에서 조세사건은 국세청 세무서에서 인계하여야 하나 관세포탈세액이 5,000만원 이상 이거나 금지품 수출입 물품원가 200만원 이상, 조세포탈액 2,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사법경찰권에 의해 수사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범죄수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8)</sup>

해양경찰에 대한 법적근거는 정부조직법 제44조에는 해상에서의 경찰활동 및 해양오염방제에 관한사무를 관장하고 해양수산부내 해양경찰청을 두도록 되어있다.<sup>29)</sup> 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따라 해양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범죄수사와 진압 등 직무범위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에 의해 해양범죄수사를 규정하고 있다.<sup>30)</sup>

27) 사법경찰관 직무규칙 제6조; 해양경찰청 훈령범죄수사규칙 제5조.

28) 국가정보원법 제16조.

29) 제44조(해양수산부)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 해양경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http://www.lawnb.com>.

30) 박성준, 「해양범죄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해양경찰학교 교재, 2005. pp. 66~67.

## 2. 기타 海上犯罪

### 1) 關稅事犯(밀수범)

관세는 조세의 일종으로서 선진국을 포함한 각국에서는 무역정책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누구나 물품을 수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관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데 그 통관과정에서 관세 등 조세를 국고에 수납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관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가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로 흡수되어야 할 재원이 그만큼 탈루될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은 밀수입된 외국 물품의 범람으로 국내산업 발달에 해를 초래하게 되고 물품대금으로 외화를 유출시켜 사치풍토를 조장하여 국민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해악을 지니게 된다. 또한 저속한 외국의 도서, 간행물, 도색영화, 음반, 조형물이 밀수입될 경우 고유한 미풍양속에 악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 특히 국가 변화의 목적을 위한 안보위해 물품의 밀수 또는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물품의 밀반입은 국가존립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화폐, 지폐, 은행권이나 무채재산권의 위조, 변조, 모조품의 수출입은 우리나라 유통구조를 왜곡시키는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 물품이 거쳐야 할 정상적인 통관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규는 세관공무원이나 수출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법규는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통관을 하였거나 통관절차 과정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명령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벌칙규정을 설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관세사범이라 함은 관세법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이 관세법령에는 관세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각종 규제 조항이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각종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를 위반한 자를 관세사범이라 한다. 따라서 관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규제를 위반한 행위란 점에서 관세사범은 조세범 또는 재정범의 일종이고 행정범의 하나이다. 또한 행정범으로서의 관세사범은 실질범과 형식범(질서범)의 2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실질범(결과범)이란 범법행위가 실질적으로 법익 또는 위험의 결과가

발생함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하고 관세법상 밀수출입, 부정 수출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형식범(질서범)이란<sup>31)</sup> 범죄의 구성요건이 일정한 행위 즉, 행위 또는 부작위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로서 어떤 법익침해 또는 위험상태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2) 麻藥 관련 犯罪

국제 범죄조직의 주요한 수입원으로는 마약류인 아편, 헤로인, 필로폰, 마리화나, 대마초, 코카인 등으로 이는 조직의 세력 확장과 다른 범죄와의 개입 기반이 되어 왔다. 국제 마약조직은 숙련된 마약제조 기술과 각종 첨단장비와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교묘히 단속망을 피하면서 전 세계 마약조직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지역 국제 마약조직들은 정부단속에 대해 요인암살 및 폭탄테러 등으로 대응하면서 국내침투가 본격화 되고 있다.<sup>32)</sup> <표 1>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해상에서 검거된 마약관련 사범 검거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1> 일본 해상보안청 마약사범 적발현황

구 분	평성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압수수사	10	14	13	16	8	
압수량	각성제	13.8kg(861정)	387.9kg(2정)	1.9kg	109.8kg	0
	대마	6.8kg	0.1kg	5.2kg	0.2kg	0.3kg
	마약	8.4kg	5.0kg	0	2g(4.997정)	2.2g
	あへん	0	0	4.2kg	0.4g	0

자 료 : 일본해상보안청, 「해상보안」, 2006, 5, p. 63.

## 3) 海上 密入國

국가간 경제성장의 차이와 개방화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해상을 통한 밀입국은 주로 생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을 통한 밀입국을 시도 할 때 기상

31) 장경학, 「법률용어사전」, 법준출판사, 1984, p. 348.

32) 김병준, “국제범죄와 실태”, 「한국 공안행정학회보집」 11권, 한국공안행정학회, 2003, p. 10.

불량으로 인한 해양사고나, 어선이나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송하다 질식사 등 인명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밀입국의 원인 대부분은 국내 노동시장의 급격한 임금상승과 단순 노무직 및 3D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에 따른다. 또 밀입국 대상자들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등 저임금 국가 국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해상밀입국자 중국인 123명 중 조선족은 102명인데 반하여 한족은 20명에 지나지 않는다.<sup>33)</sup> 그 이유로는 조선족들이 지리적 근접성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한국을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의 조선족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및 우리 정부의 입국심사 강화로 합법적인 입국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밀입국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한족과 조선족들이 불법경로로 국내에 잠입하게 되면 곧바로 불법체류로 이어져 외국인 범죄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

밀입국 조직은 중국 현지와 국내조직이 연계하여 무비자 여행객을 빙자한 모집책, 운송선박 알선책, 해·육상 운송책 등으로 역할을 상호 분담하여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운송수단도 어선위주에서 탈피하여 화물선, 컨테이너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최근 중국인의 해상밀입국 경로의 경우, 흑룡강성에서 서해안 지역(군산)으로 군산 이북지역은 해상과 해안의 경계가 심하여 군산 이남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선박 항해거리가 2~3일 소요되고 항해거리가 짧은 지역으로 이곳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선호하는 곳은 중국 요동반도(대련항)에서 흑산도·홍도는 남해안 지역(남해, 사천, 부산 등)으로 이 지역은 해상경계 및 검문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경로로서 무인도로 나서는 낚시꾼 출입이 잦은 새벽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선박의 항해거리가 3~5일이 소요된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산둥성 반도(영성항)에서 흑산도 남서해안 지역(목포인근)으로 이곳은 밀입국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이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해상경계가 취약하여 적발이 어려움과 조업하는 선박으로 위장하여 상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곳을 이용할 경우 보통 3~4일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요동반도(대련, 여순항)에서 출항 공해상에서 한국선박에 환승 남서해안 지역(목포, 부산, 제주 등)으로 이동이다. 이 경로는 거리적으로 선박의 항해 시간이 길고 시간이 많

33) 경찰청, 「경찰청 백서」, 2006 참조.

이 소요되지만 가장 안전하다.

#### [사례]

① 3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 국적의 관광객 13명이 관광차 제주를 방문했으며, 이날 오전 관광에 앞서 여행사 관광안내원이 인원점검을 하던 중 숙소를 무단이탈 사실을 발견 제주공항 경찰대에 신고 경찰은 사고 접수 후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숙소를 이탈하면서 개인 소지품 등을 모두 놓고 나갔다"면서 공항과 항만 검문을 강화하는 등 이들의 숙소를 이탈, 행방이 묘연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7. 7일 오후 9시4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에 은신 중 중국인 장모씨(여.34) 등 13명을 호텔 주인 양모씨(39)의 신고로 붙잡았다. 외국인들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여권의 보증 없이도 제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sup>34)</sup>

② 지난 8. 5일 북경-제주 노선을 이용해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에 온 무사증 중국인 관광객 20명 중 18명이 숙소인 서귀포시 서귀동 S호텔을 무단이탈하였고, 이날 오후 2시 상해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인원 점검을 하던 가이드 장모씨가 이들의 무단 이탈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무단 이탈자 인적사항과 사진이 들어 있는 수배자 명단을 공항과 항만에 배포, 검문검색을 강화하였다.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인솔하고 입국한 현지 가이드 및 여행사 대표를 불러 자세한 이탈 경위를 조사 중이다.<sup>35)</sup>

#### 4) 海上 密輸

해양경찰은 지난 1953년 12월 23일 어업자원보호, 평화선 수호, 해상치안 목적으로 창설되었다.<sup>36)</sup> 해양관할권내에서 해상범죄를 단속하고 그 중 해상을 통한 밀수사범을 검거처리하고 있다. 밀수의 유형은 무역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무역편승 밀수사범, 부정수출입 사범 등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선원밀수 및 선박을

34) www. jejutoday. com .news, 2007. 7. 10.

35) www. issuijeju, com, news, 2007. 8. 9.

3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30년사」, 경인인쇄사, 1984, p. 3



이용한 밀수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관세사범에 해당하고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수입자유화의 확대 및 국산품의 품질향상으로 밀수의 증가는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밀수수법은 더욱 지능화·다양화 되었다. 정상적인 무역을 위장한 밀수가 최근 성행하고 있으며 참깨 등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의 해상 밀수행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sup>37)</sup>

#### (1) 무역편승 밀수

수입업자들이 물품을 정식 수입하면서 식별이 곤란한 수입 제한품목을 위장 반입하거나 은닉·반입하는 경우가 있다. 즉 수입제한 중고품(선박, 기계류)의 조건을 위배하여 위장수입하기도 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산 물품 반입시의 비관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 관련서류(원산지증명서, 항해일지 등)를 조작하거나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농수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는 등 무역을 이용한 밀수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수입 다변화 정책에 따라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제품 등을 밀수입하면서 일본제품을 미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우회시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해체하여 여러 세관을 통해 분해 위장수입 하는 경우도 있다.

#### (2) 선박편 밀수

우리나라 밀수 형태는 일본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 밀수와 국내·외 농수산물 가격 차액을 남기기 위한 동지나해 또는 서해상에서 중국·대만선박과 접선 또는 그곳에 寄港하여 농수산물을 밀수입하는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어업을 위장한 어선들은 전자제품 등을 선적 공해상에서 중국어선과 접촉 중국산 농산물 참깨와 수산물인 아귀, 복어 등 농수축산물이나 주류, 도자기, 건 버섯 등 각종 물품과 물물교환 하여 밀수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물물 교환한 수산물을 직접 어획 한 것으로 위장 반입하여 판매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전문적인 밀수꾼들의 경우 중국 현지에 행동책을 두거나 중국 범죄단체와 결탁

37) 김종선, "해양관할권에서 외국선박의 불법조업 실태와 대응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82~95.

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 국내 히로빵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및 대만산의 히로빵 및 그 원료가 선박을 통해 밀수입되기도 하였다. 중국 교포들에 의한 밀수의 경우 한약재 등 반입은 감소되고 있으나 산삼, 아편 등 소형 고가품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검거된 총기류 밀수사범 적발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총기류사범 적발현황

(단위 : 건)

구분	평성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압수사안수	5	4	4	3	1
총기(정)	24	3	4	1	1
けん총	20	2	2	1	0
실포(발)	318	58	75	6	0

자료 : 일본해상보안청, 「해상보안」, 2006, 5, p. 63.

### (3) 통관위장 밀수

밀수수법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밀수품 진열판매는 거의 없어졌지만, 수법이 더욱 지능화 되면서 물품은 창고에 보관하고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판매하거나 상가 단속에 대비하여 자체정비를 강화하기도 한다. 부정 유출된 골프채 등에 통관필증 부착, 불특정 수입免狀의 비치 등 정식 통관된 물품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1996년부터 수출·입 면허제에서 수출·입신고제로 전환되어 통관절차가 간소화된 데 따라 통관절차에서 밀수품을 적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었으므로 시중 유통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밀수품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 5) 海洋管轄權內 不法操業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갖는데 주권적 권리로는 생물, 비생물 자원의 이용보존과 수역의 경제적 이용권이 있다.<sup>38)</sup> 불법조업이란 외국선박이 국내법 또는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어로행위가 금지된 우리나라 해양

관할권을 침범하여 어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39)</sup> 여기서 외국선박이라 함은 첫째, 대한민국의 국적 또는 선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 둘째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국내법 또는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어로행위가 문제되는 우리나라의 수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 어업자원보호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바다에서의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및 선박안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수산업법을 비롯하여 실질적 의미의 수산업법인 낚시어선법,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어업자원보호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어항법, 어선법, 공유수면매립법,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해양오염방지법, 개항질서법,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법령 중 수산업에 관하여 규율하는 내용에 저촉되거나 하위 법령인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등 대통령령과 부령, 해양수산부 고시 등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40)</sup>

#### (1) 조업금지구역·기간위반 조업행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그리고 어업협정규정에 조업의 금지구역과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최근 조업구역의 축소와 연안어장 고갈과 고유가로 원거리 조업 기피현상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법규에서는 적정 어구사용과 금지구역에서의 조업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어업에 있어서 적법한 허가를 가지고 규정된 법률이나 附款대로 행하면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된 어구보다 많은 양을 보유하고 조업을 하는 경우와 연안 저인망 조업구역을 위반 또는 조업기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8) 이평현, “한·중·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해양관할권에 관한 고찰”, 해양경찰학교 교수요원 논문, 2004, pp. 150~151.

39) 김종선, “해양경찰 관할권내 불법어업실태와 대응방안연구”, 「해양경찰학교 교재」, 해양경찰청, 2005, p. 395.

40) 앞의 논문, pp. 29~30.

## (2) 무허가 어로행위

내·외국적 어선은 조업을 함에 있어서 국내인 경우 업종별 조업절차에 따라 조업시기와 어종을 구별해 놓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명시되어 있다. 외국 선박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선박에 허가사항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판을 부착하고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sup>41)</sup> 또한 허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선박의 무허가 어업행위에 대한 실질적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584척을 나포 하였다.<sup>42)</sup> 나포 증가 이유로는 어선어업의 구조조정 이전의 다획을 노려 감척에 응하겠다는 지능적인 수법과 이렇게 해서 적발된 어선들은 어업 허가를 가진 선박이 불법어업 행위로 적발될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함께 용자금 일시상환은 물론 면세유 공급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등 처벌이 무겁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허가 선박은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고질적인 불법어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 (3) 국내수역 및 영해침범 어로행위

국내수역 및 영해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친다. 따라서 국내수역 및 영해에서의 외국인 또는 외국적 어선의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주권에 의하여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포된 외국어선도 매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43)</sup> 외국어선이 영해를 침범하여 어로행위를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이 중한 때에는 선박, 기자재, 체포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sup>44)</sup>

## (4) 어업자원보호수역 침범 어업행위

어업자원 보호수역의 평화선은 당시만 하여도 한·일간의 어업 격차와 어족자원

41) 해양수산부, “한중어업협정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규칙”, 행정기관업무 참고용, 2007, pp. 23~36.

4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6 참조.

43)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6 참조.

44) 해양수산부, “한중어업협정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규칙”, 행정기관업무 참고용, 2007, pp. 23~36.

및 대륙붕자원의 보호, 세계 각국 영해의 확장으로 영해 주권적 권리 추세에 대응하고자 선포되었다. 1952년 1월 18일 이런 배경으로 선포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해 이승만의 선언한 평화선 또는 Lee Line으로 불리는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로 이 수역에서의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당시 이웃 나라인 일본을 비롯해서 반대가 많았다.

1953년 12월 18일 제정된 어업자원보호법에서는 이 평화선 안의 수역을 어업자원보호수역설정과 이 안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어업자원보호수역은 경제수역과 비슷한 의미로<sup>45)</sup> 이 수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몰수 한다

(5)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행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6년 8월 8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하여지는 외국인의 일정한 어업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형사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

<표 3> 중국어선 불법조업 유형별 위반 사례

(단위 : 척)

구 분	계	EEZ								훈 방
		소계	무허가	허가제한조건위반						
				소계	조업일지 부실기재	선박서류 미 소지	비허가 어구사용	조업기간 위반	기 타	
계	331	292	99	170	137	6	10	13	27	39
2006	166	153	54	99	66	6	10	3	14	13
2005	165	139	45	94	71			10	13	26
전년 대비	0.6%	10%	20%	5%	▲7%	6	10	▲70%	8%	▲50%

자 료 : 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유형별 사례 분석", 내부분서, 2007. 1.

45) 맹운재, 「수산관계법규」, (어업자원보호법), 부연사, 2006, p. 147.

한·중·일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을 마련하고 EEZ에서의 조업절차를 준수하고 있다.<sup>46)</sup> 외국선박의 선장은 해양사고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 이 규정에 위반 나포건수는 <표 3>과 같다. 2006년의 경우 상기 법 위반 조업 외국어선 166척을 나포하기도 하였다. 이를 나포하면 그에 상응한 벌금과 몰수, 추징을 하고 있다.

### 第 3 節 海洋管轄權 海上犯罪事犯의 活動 動向

#### 1. 動 向

국제사회는 북한 핵실험과 이라크戰 발발 이후 중동정세의 불안정 그리고 9. 11 테러, 프랑스 소요사태 등 국제적인 테러와 인종·종교적 갈등이 상존하며,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 강대국도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지속되는 경제 성장과 중국 등 다른 신흥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중앙아시아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보고라는 점과 아프간 전쟁 이후 테러조직의 근거지화로 마약과 불법무기의 유통, 인간장기 밀매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발상지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강대국들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거대 게임’(Great Game)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고속성장과 산업화로 에너지 자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와 통제를 둘러싼 국가간 견제 양상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대·심화하였지만 무역시장 개방, 교역관행, 제도·규정상 차이로 인한 마찰 등 잠재적 갈등요인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한·중 간 고구려사

46) 해양수산부, “한중일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행정기관업무참고용, 2007, p. 23.

문제 그리고 韓·中·日 간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미진한 가운데 각국의 민족주의 성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성장을 중시하면서도 ‘균형·분배·인본’을 강조한 ‘공동부유론’이 주요 발전전략으로 부상하였다. 대외적으로 양국관계는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하며 ‘화평발전’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 강대국과의 경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대내적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 실패 및 이라크 사태 악화 등으로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되고,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정치·사회적 양분 구도가 심화되었다. 카트리나 피해와 고유가 심화로 경기가 둔화되는 등 악재가 계속되기도 한다. 대외적으로는 기존 일방주의 외교정책에 자성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동맹국과의 협의 체제를 강화하여 외교 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러시아는 푸틴이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으며 효율적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정책을 지속하였고,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6%내외의 GDP성장률을 이어나갔다. 대외적으로는 에너지 자원 외교를 강화하며 세계적 차원의 외교정책 목표인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켰다. 아울러 CIS국가들과의 사안별 협력을 확대하였으나 해당 국가들의 친 서방 정권의 수립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유럽은 완만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며 EU 회원국 확대 논의를 지속하였고 ‘EU 헌법’ 인준 부결에 따른 대안 마련 및 공동외교 안보정책(CFSP)의 진전을 추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테러 등에 있어 세계적 역할 모색과 다자주의적 국제질서를 추구함과 동시에 미국·러시아와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면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시아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계속적으로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강대국의 영향력 강화 및 자원 확보 외교의 활성화 기조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제정세는 시장경제를 앞세운 실리를 추구하여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대부분의 부문에서 규제완화가 대세를 이루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 해상범죄 단체가 각 지역을 선점하고 국제 무대화

하기 위한 밀수, 밀매, 마약거래, 밀·입출국 등 해양관할권에서의 범죄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졌다.

## 2.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環境的 要因

### 1) 國際的 治安需要의 증가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 경제시대의 진입으로 국가간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은 인종·민족간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교류와 외국인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제적 치안수요의 급증을 가져왔으며, 특히 급증하는 해상에서의 국제범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해양경찰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 (1) 입출국의 증가

<표 4>에 의하면 2005년 내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총 32,638,035명으로 2004년 대비 10.2%(3,028,575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유가 행진에도 불구하고 2005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시행된 주 5일제 근무의 영향으로 인한 내국인의 출입국 증가와 일본 중국의 소비지출 회복 및 한류열풍에 따른 여행객의 대폭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표 4>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203,980	18,058	14,974	18,190	18,750	22,643	25,146	23,972	29,609	32,638
내국인	119,611	12,591	6,714	9,211	10,126	12,649	14,808	14,697	18,177	20,638
외국인	84,369	5,467	8,260	8,979	8,624	9,994	10,338	9,275	11,432	12,000

자 료 : 경찰청, 「경찰청백서」, 2006.



(2)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표 5>에 따르면 2005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APEC을 비롯하여 정부 및 민간단체의 활발한 국제행사 유치 활동에 따라 방문객의 수가 증가하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또한 장기 체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외사요원의 수요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미국, 일본이 그 뒤를 이루고 있다.

<표 5> 국적별 외국인체류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연도	계	중 국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프랑스	독일	기타
			조선족	한족								
계	2001	566,835	112,334	88,850	94,131	33,167	24,003	28,817	22,032	1,901	1,794	159,806
	2002	629,006	118,300	105,110	101,786	36,648	24,865	29,700	27,027	1,981	1,894	181,695
	2003	678,687	132,305	105,192	106,390	42,504	25,725	32,451	27,545	2,059	2,043	202,473
	2004	750,873	161,327	120,607	105,315	42,949	25,410	34,828	35,123	2,046	2,079	221,189
	2005	747,467	167,589	114,441	103,029	39,410	25,121	25,599	34,188	2,315	2,434	233,341
장기	2001	244,384	42,827	30,740	33,534	14,789	22,801	16,364	3,618	1,350	1,001	77,360
	2002	271,666	48,293	36,297	37,634	15,498	22,714	17,305	4,793	1,478	1,350	86,304
	2003	460,261	108,283	77,202	39,954	16,165	22,600	27,569	19,998	1,521	1,483	145,486
	2004	491,409	128,287	80,036	38,989	16,631	22,300	27,940	21,892	1,546	1,428	152,360
	2005	510,509	146,338	70,654	41,791	17,485	22,200	18,197	21,402	1,611	1,616	169,215
단기	2001	322,451	69,507	58,110	60,597	18,378	1,232	12,453	18,414	551	793	82,416
	2002	357,340	70,007	68,813	64,152	21,150	2,151	12,395	22,234	503	544	95,391
	2003	218,426	24,022	27,990	66,436	26,339	3,125	4,882	7,547	538	560	56,987
	2004	259,464	33,040	40,571	66,326	26,318	3,110	6,888	13,231	500	651	68,829
	2005	236,958	21,251	43,787	61,238	21,925	2,921	7,402	12,786	704	818	64,126

자 료 : 법무부, 「통계자료」, 2006.

2000년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는 <표 5>와 같이 75만 여명이 체류하면서 외국인관련 국제성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범죄양상도 지능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위장결혼, 여권 위·변조, 외국인 등록증 위조행사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합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 (3) 불법체류·밀입국 사범

불법체류 외국인은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5년 12월 기준 총 180,792명으로 2004년(188,483명) 대비 4.1%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23.6%에 해당한다.

<표 6>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단위 : 명)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81,866	129,054	148,048	99,537	188,995	255,206	289,239	138,056	188,483	180,792
단 기	68,285	105,193	115,058	74,236	39,803	64,813	80,457	68,640	86,472	102,381
장 기	13,581	24,861	32,990	25,301	149,192	190,393	208,782	69,416	102,011	78,411

자 료 : 법무부, 「통계자료」, 2006.

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전체의 43.9%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인들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동포들의 위장결혼, 여권 위·변조 등 불법입국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취업 결혼 등을 빙자한 사기 등 범죄행위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sup>47)</sup>

47) 법무부, 「통계자료」, 2006. 참조

#### (4) 국제 조직범죄의 위협 증대

국제 범죄조직 중 일본 범죄조직의 경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호주는 물론 동남아시아 등지로 진출하여 합법을 가장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위장기업 형태의 해외거점 마련을 시도하는 등 국제조직화를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 범죄조직은 구소련 붕괴이후 활동영역을 넓혀가면서 수산물 교역 등을 병자하여 동남아시아지역 등으로 진출, 금융회사 위장건설회사 설립 등을 통해 각종 불법자금을 돈세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북태평양지역의 선박운영·수산물 교역 등에도 깊이 관여하는 등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국계 범죄조직은 홍콩과 대만에 기반을 두고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는 아니나 미주 유럽 등 국가에서 화교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마약과 폭력 등을 자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각 국가를 상대로 중국인들의 밀입국 알선은 물론 신용카드 위조 등으로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 第 4 節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發生 推移

#### 1. 國際性 犯罪 發生

해양은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재산으로 해양관할권 부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범죄는 국가와 국가간의 공동 이득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형태로 나타났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설정하고<sup>48)</sup> 외국어선에 대한 조업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가간 해상교통 등을 이용하여 범죄단체조직의 이익이 되는 일에는 국경을 초월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와 세계정세의 변화로 내·외국인의 출입

48) UN해양법협약은 1982년 12월 10일에 발효되었는데, 동협약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해양에 관한 헌법적 성격을 가진 법이다. 여기서 영해는 폭은 12해리이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신설, 심해저 부존광물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정의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하고 연안국의 관할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시의 허가 등을 규정,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치 등 해양관련 분쟁해결의 제도화를 집대성한 협약이다.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실무지침서”, 국제법규, 2006, p. 1.

국자 수는 <표 4>와 같이 현저한 증가는 물론 물적 교류 확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내국인 해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죄, 내외국인 범죄자의 도피, 국제적인 밀수, 테러행위 등 국제범죄의 증가 예상과 특히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북방제국의 교포 및 개도국 인력의 불법취업과 滯留, 다국적기업에 의한 범죄, 국제 조직범죄를 통한 불법범죄들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해상을 통한 밀수, 밀 출입국 사건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중국어선의 조업을 위장한 밀입국과 불법조업어선 증가, 조업을 위장한 밀수, 원양어선의 해적에 의한 선박 피랍 등으로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49)

1) 海上犯罪 發生 推移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범죄는 한·중·일 어업협정 이후 불법조업 검거척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표 7>은 최근 10년간의 해양범죄의 증감현상을 나타낸 표이다. 이와 같이 해양범죄증가 이유는 국민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고조와 안전 불감증,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치안환경변화에 따라 해상안전과 국제 범죄인 해양오염등과 같은 특별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범죄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해양범죄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7,015	24,680	34,514	34,716	30,588	31,587	32,268	34,728	37,060	42,661
형법범	2,073	3,050	3,705	5,757	5,121	5,713	5,521	8,409	9,747	10,419
특별법범	4,942	21,630	30,809	28,959	25,467	25,874	26,747	26,319	27,313	32,242

자 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6.

49) 김현, “해양경찰행정수요 분석과 기능정립방안”, 해양경찰학교교재, 2005, p. 97.

2005년 해상범죄는 총 42,661건이 발생하여 2004년 37,060건 대비 15.1%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수산·안전사범 등 특별법범은 32,242건으로 전체 범죄의 75.6%를 차지하고, 형법범은 10,419건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다.

(1) 강력범죄

강력범죄인 약취유인 등 인권유린사범은 3D업종에 대한 직업 기피현상이 날로 심해짐에 따라 연근해 어선 및 도서지역 양식장등에서 선원 등 인력이 매우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일부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에서 업주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미성년자, 가출인, 무경험자 등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취업 알선행위를 하거나 약취유인 및 취업알선을 병자한 감금·폭행·선불금 착취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유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바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48건에 63명을 검거하였다.

<표 8> 인권유린 사범 유형별 단속실적(2005년)

(단위 : 건수)

유형별 구분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계	48	63	7	56
폭 력	31	39	6	33
무허가 직업소개	13	14	-	14
선불금 착취	2	6	1	5
외국선원 폭력	1	2	-	2
감금 등 약취유인	1	2	-	2

자 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6.

(2) 밀입국 범죄

해상을 통한 밀입국은 과거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도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에

밀항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국가든지 개방화와 탈냉전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잘 살아보자는 심리 속에 분출되는 것처럼 중국 조선족과 한족인도 잘사는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있다. 이유로는 언어소통 원활과 밀입국 소요 시간 단축 그리고 높은 고임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즉 생존권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잠입하게 되면 곧바로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의 발생요인이 된다.

밀입국조직은 중국 현지조직과 국내조직이 연계하여 모집책, 운송선박 알선책, 해·육상 운송책 등으로 임무를 상호 분담하는 등 국제적인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운송수단에 있어서도 종전 어선위주에서 탈피하여 화물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표 9>에서 보듯이 해상 밀입국은 2005년 한 해 동안 검거한 해상 밀입국가수 123명으로 러시아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인(조선족 102명, 한족 20명)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밀입국이 많은 이유는 ‘코리아 드림’을 가진 중국인 다수가 한국 입국을 희망하고 있으나 조선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여권 발급제한 및 우리나라의 입국심사 강화 등으로 정상적인 입국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밀입국 알선비용을 국내취업 후에 상환토록 하는 후불제 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해상밀입국은 중국과 국내 알선책들이 한탕주의에 편승,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환승과정에서 검거되자 이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2003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해상을 통한 밀입출국 범죄는 국제 해양법협약 제33조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관세재정, 출입국 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위반의 방지,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생한 위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과 동법 33조 추적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밀입국범죄에 이용되는 선박의 몰수 형법 제48조등의 근거에 의해 검거하고 있다.

밀입국 방법으로는 어선을 이용하여 비교적 대규모로 밀입국을 시도한 반면 최근에는 화물선이나 어선 등을 이용하여 대부분 10명 내외의 소규모 밀입국을 시도하는 추세이다. 최근의 수법으로는 유효한 여권, 선원수첩 등을 발급받아 합법을 가장하여 입국하거나 친·인척을 위장하여 호적부 등을 위조한 후 국내에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9> 해상 밀입국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연도별/국적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계		1,033	260	292	130	123
중국인	조선족	930	207	179	108	102
	한 족	97	53	113	22	20
기 타		6	-	-	-	1

자 료 : 경찰청, 「경찰청백서」, 2006.

(3) 밀수사범

밀수는 국가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상을 통한 밀수는 주로 공해상에서 조업 선을 위장한 어선 등에 옮겨 싣는 방법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하는 컨테이너 속이나 소포장 안에 밀수품을 은닉한 후, 겉에는 물품을 쌓아 밀수하는 방법 등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밀수사범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지 못할 경우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표 10>에서 밀수사범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23건에 47명(압수액 29억 8,060만원)의 밀수사범을 검거하여 13명(8명 구속, 5명 불구속)을 입건하고 34명은 관세청에 이첩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동일(23건)하나 금액은 1,160%(337억원)가 감소한 것이다.

<표 10> 해상 밀수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검 거		처 리			금 액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이첩	
	계	57	121	22	13	86	399억8천만 원
	2003	11	20	-	-	20	3억6천만 원
	2004	23	54	14	8	32	366억4천만 원
	2005	23	47	8	5	34	29억8천만 원

자 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6.

(4) 마약류 유통 현황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1988년 12월 20일 발효되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향정신성물질의 생산, 제조, 수출, 제재, 제공, 판매를 위한 제공, 배포, 판매, 배달, 중개, 방송, 발송, 통과발송, 운송 또는 수출행위금지, 해상불법 거래 방지, 범죄인 인도 및 사범공조, 형사재판 관할권 등 관련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들에 비해 마약 남용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약류 밀수출의 중간 경유지로 한국을 이용하는 국제 마약조직과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마약의 주 생산지는 기존의 중남미 「코카인 삼각지대」, 동남아시아의 「황금의 삼각지대」, 「황금의 초생달 지역」 등에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였으며 소비지 또한 기존의 미주·유럽 등 선진국 중심에서 중국·동구권·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약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투약자 자신은 물론 주변인까지도 빠르게 병들게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며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중대한 사회악이라 하겠다. <표 11>은 최근 3년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이다.

<표 11>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연도	구분	검 거		처 리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이 첩
2003		9	16	7	9	-
2004		25	31	4	27	-
2005		30	26	2	24	-

자 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6.

(5) 외국어선 불법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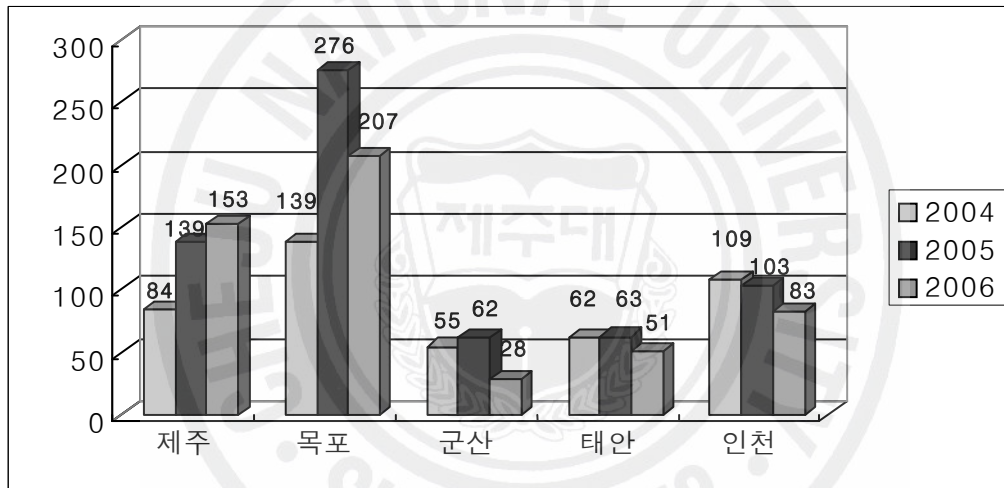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영해 및 접속수역에서의 마구잡이식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2002년 한·중 어업협정이후 우리 측 수역에서 조업제한을 받게 되자 관행적으로 조업하던 우리수역과 북방한계선을 간헐적으로 침범·불법조업하다 해상검문 검색<sup>50)</sup>에 의해 적발된 단속건수는 <그림 1>과 같이 목포, 제주, 인천, 군산, 태안 해상을 중심으로 나포되고 있다.

2002년도 EEZ 및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은 175척에서 2003년도 240척, 2004년 449척, 2005년 584척 그리고 2006년도에는 522척이 나포되었는데, 이는 해양경찰이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 결과라 하겠다.<sup>51)</sup>

<그림 1> 외국 불법조업어선 검거현황



자 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내부자료, 2006.

불법조업에 나서는 외국어선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어선으로 중국 연안의 어족자원 고갈과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구역축소로 인해 우리 측 EEZ 침범 불법조업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50) 김대식, 「해상검문검색지침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종합학교, 해양경찰청, 2006. p. 8

51) 해상검문검색 근거로는 UN해양법협약 제110조 입검권, 동법 105조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나포, 동법 제106조 충분한 근거 없는 나포에 따르는 책임, 헌법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지위와 EEZ내 외국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은 UN해양법협약 제56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제73조 연안국 법령의 시행, 제11조 추적권,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 제3조,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등.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실무지침서」, 「국제법규」, 해양경찰청, pp. 14~15

<표 12>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현황

구분	검거 척수	처리			벌금납부액
		구속	불구속	기타(불기소)	
계	1,449	248척 575명	1,093척1,093명	8척8명	1,337,100만원
2002	176	67척67명	109척109명		244,900만원
2003	240	142척151명	98척98명		188,600만원
2004	449	75척190명	368척368명	6척6명	404,500만원
2005	584	64척167명	518척518명	2척2명	499,100만원

자 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6년.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대부분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남서방과 서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EEZ,와 근접한 산동성, 요녕성, 절강성 선적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표 13> 선적지별 외국어선 나포 현황

(단위 : 척)

선적지 연도별	계	요령성	산동성	절강성	하북성	강소성
계	332	85	157	83	3	3
2006	166	35	88	42	1	
2005	165	50	69	41	2	3
년 대비	0.6%↑	30%↓	28%↑	2%↑	-1	-3

자 료 : 해양경찰청, “중국어선 나포사례 분석”, 내부분서, 2007.

(6) 국내어선 외국 피랍

우리나라 어선들도 한·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로 조업구역축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어획량이 부진하자 일부 어선들이 多獲을 목적으로 일본수역과 중국수역을 침범 불법조업하다 피랍되어 구속·벌금납부 등 국익을 실추시키고 있는데, <표 14>는 우리 어선들이 외국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피랍된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표 14> 우리어선 외국수역 불법조업 피랍 현황

구 분	일 본		중 국		러시아	
	척 수	벌금납부	척 수	벌금납부	척 수	벌금납부
계	91	9,989만 엔	1	4,800만원	4	4,922만원
2002	30	2,772만 엔	1	4,800만원	2	692만원
2003	26	2,374만 엔				
2004	20	2,008만 엔			1	2,430만원
2005	15	2,835만 엔			1	1,800만원

자 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6.

## 2. 外國人 犯罪團束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인 밀입국, 밀수, 마약, 불법 총기류 밀매, 해적행위는 <표 1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나날이 지능화·조직화 추세에 있다. 해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2005년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과 소속 국제 범죄수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활동한 결과 짝퉁시계 밀수사범 검거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국제 해상범죄 단속에 국내 유관기관 및 주변국 해상치안기관과 공조협력 하여 2005년도에는 밀수·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는 <표 15>에서 보는바와 같이 620건이 발생하여 1,007명을 검거하였다.

<표 15> 외국인 범죄단속 현황

연도별 유형별		2003		2004		2005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계		368	682	609	1,040	620	1,007
형법범		35	54	34	52	70	97
특 별 법 범	소 계	333	628	575	988	550	910
	해양오염방지법위반	65	100	94	129	66	70
	출입국관리법위반	19	261	11	50	13	63
	관세법 위반	1	2	2	4	1	-
	불법조업외국어선	240	251	449	776	434	753
기타 사범		8	14	19	29	36	24

자 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6.

<표 16>의하면 해적 행위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3,202회가 발생하였으며 한국선박 대상으로는 6회 발생하였다. 그리고 발생지역도 <표 17>과 같이 동남아시아에서 1,444회가 발생하여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 644회 20%, 인도 481회 15%순으로 나타났다.

해적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도 4,586명 중 사망 341명, 행불 164명 등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적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인명피해도 <표 18>에서 보듯이 상당하다.

<표 16> 10년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현황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전 세계	228	248	202	300	469	335	370	445	329	276	3,202
한국선박			1		1		1	2	1		6

자 료 : [http://www.gicoms.go.kr/sea\\_info/ssam.asp](http://www.gicoms.go.kr/sea_info/ssam.asp)

<표 17> 지역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 현황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소계	228	248	202	300	469	335	370	445	329	276	3,202(6)
동남아	124	92	89(1)	161	242(1)	153	153	170(1)	158(1)	102	1,444(4)
극동	17	19	10	6	20	17	17	19	15	20	161
인도	24	37	22	45	93	53	52(1)	87(1)	32	36	481(2)
중남미	32	37	35	28	39	21	65	72	45	25	399
아프리카	25	46	41	55	68	85	78	93	73	80	644
기타	6	16	5	5	7	5	5	4	6	13	72
미상	0	0	1	0	0	0	0	0	0	0	1

자 료 : [http://www.gicoms.go.kr/sea\\_info/ssam.asp](http://www.gicoms.go.kr/sea_info/ssam.asp)

<표 18> 해적 및 무장강도 인명피해 현황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소계	293	643	485	473	480	331	327	644	401	509	4,586
인질	193	419	244	402	202	210	191	359	148	440	2,808
납치	0	0	0	0	0	0	0	0	86	13	99
위협	56	119	68	21	72	45	55	65	34	14	549
폭행	9	23	58	22	9	16	9	40	12	6	204
부상	9	31	37	24	99	39	38	88	59	24	448
사망	26	51	78	3	72	21	10	21	32	0	314
행방불명				1	26		24	71	30	12	164

자 료 : [http://www.gicomsgo.kr/sea\\_info/ssam.asp](http://www.gicomsgo.kr/sea_info/ssam.asp)

## 第 4 章 環境變化에 따른 海上犯罪의 展望 및 國家別 團束機關

### 第 1 節 國際社會 環境變化 推移

#### 1. 인터넷 등 情報通信技術의 發達

##### 1) 위성 및 携帶電話의 一般化

휴대전화의 일반화<sup>52)</sup>되면서 범죄단체 조직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휴대전화의 각종 조직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마약거래와 밀입국 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약물을 판매하는 범인들은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면서 수요자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약물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많은 수요자들이 공급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휴대전화는 200만엔(1천500만원상당) 이상에 거래될 정도이다. 그리고 도박에 있어서는 파친코부정에 휴대전화의 동원되고 있다. 파친코의 확률을 제어하는 전자부품 룸을 파친코 점의 몇몇 파친코 뒤에 몰래 부착시킨다. 그런 다음 음식점 등에서 공범자를 포섭해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어떤 장소에 어떤 파친코에 조작을 해두었는지를 알려준다. 물론 이는 기밀정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범행직전과 직후에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sup>53)</sup>

매춘에도 휴대전화의 사용되고 있다. 매춘조직들은 휴대전화로 2중, 3중으로 손님을 전송시켜 경찰이 덮쳐도 허탕 치기 일쑤인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매춘부들을 휴대전화로 '무장'시켜 서로 다른 장소에 대기시킴으로써 검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법이민에 있어서 중국인 입국을 중개하고 있는 일본의 범죄조직인 이른바 '蛇頭'도 휴대전화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도 차량대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타인의 이름과 영터리 주소로 차량을 빌리

52) 무선통신시장은 연간 15조8972억원으로, 하루 436억원, 유선시장은 연간 14조원, 그리고 2006년 번호이동과 DMB 상용화는 59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모아박스, "새로운 통신혁명", 하이모리스 마케팅, 2006, p. 6.

53) 뉴스피플, 1997년 6월 18일자.

는가 하면 일본에서 중국인을 납치 유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국의 가족을 협박, 돈을 뜯어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경찰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인 휴대전화번호와 통화기록 등을 추적하기도 하고 현장부근에서 용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를 재확인하는 등 역이용하기도 하지만 범죄조직의 첨단화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죄자들은 경찰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첨단장비를 누구보다 먼저 도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팩시밀리, 비퍼(Beeper)에 이어 휴대전화가 범죄인들의 새로운 장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선전화의 경우에는 발신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용의선상에 떠오르면 추적이 쉽지만 휴대전화는 이동체이기 때문에 전파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통신비밀 보장 때문에 마약거래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도청이 가능하다.

## 2) 인터넷 發達

초고속 통신망에 의한 빠른 인터넷시대에 따라 범죄양상도 시대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하여 국제범죄의 공동체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하이테크 범죄유형을 생각하여 볼 때 해상범죄에서도 악용 우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인터넷은 세계 각국에 인터넷 망이 형성되어 그 접속에 있어 통제장치가 아직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국제 해상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여 진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마약, 장기매매 등의 전자상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E-mail을 이용한 거래와 각국간 범죄조직의 연락방법으로도 E-mail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E-mail을 이용할 경우 상호연락 등에 그 포착이 쉽지 않고 컴퓨터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검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컴퓨터의 대중화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해킹을 이용한 정부나 기업,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교란시키는 컴퓨터범죄가 유형화 되고 있다.

## 2. 東유럽 體制變化

지구상에는 대체로 170여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이 모든 국가들은 나름대로 법률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법률체도를 고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양대 체제로 나누어 비교연구 한다.<sup>54)</sup>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 체제붕괴는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적으로는 동유럽의 각 국가에서 민주화의 확대를 가져왔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가 본격 도입 되면서 민주화의 확대나 시장경제의 도입이 동구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다. 급격한 사회구조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문제가 그것이라고 하겠다.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적인 문제점들은 민주화나 시장경제의 도입만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부터 존재하던 빈곤의 문제가 심화되었다. 저성장과 경제적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적인 침체에 이은 고용의 불안정으로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게 되었다. 사회문제의 급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모든 동유럽 국가들에서 급격한 범죄의 증가현상으로 나타났다.<sup>55)</sup> 동유럽 국가들에서 이와 같이 범죄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상대적 빈곤감의 확산과 규범의식의 해이를 들 수 있다.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범죄증가는 신생 민주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을 마련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마약범죄와 테러리즘 등의 범죄의 확산 등은 새로운 범죄 유형들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다른 범죄들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동유럽의 범죄는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리차드 알렌의 지적과 같이<sup>56)</sup> 체제변환국가에 있어서의 범죄는 더욱 국제적인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54)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학문사, 1996, p. 33.

55) 이건호(역), 「체제변환 국가의 범죄현상」, 수사연구사, 2004.

56) Allan, R., New World Order Brings Chaos and crime in Many Countries.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vol. 9, 3 . p. 18.



### 3. 유럽의 脫 國境化

서부유럽은 제대로 된 국경이 없이 탈 국경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동부와 서부유럽을 갈라놓았던 철의 장막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서부유럽의 사회적, 정치적, 법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범죄발생의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유럽 연합국가의 상황은 범죄 갱들이 조직 범죄화를 피하거나 기존의 범죄조직이 지리적,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하거나 또는 동부유럽, 남미, 극동의 조직들이 즉 서부유럽 외부의 범죄조직이 이 지역으로 침투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유럽각국은 형사법, 행정규제법, 사업(경제관련)법 등이 나라별로 서로 달라서 범죄자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가별로 법률이 다르고 때로는 모순이 되어 여러 가지 맹점이 생겨나 범죄조직은 이러한 맹점을 이용 국가간의 공조수사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유럽 연합 가맹국이나 인접국가의 범죄는 최근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第 2 節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 國家別 團束機關

### 1. 日本 海上保安廳

해상보안청은 50년 전 1958년 5월 미국연안경비대(USCG)를 모델로 해사에 관한사항을 일원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대의 해상보안청은 해상치안유지, 해상교통안전확보, 해상레저활동 안전확보, 해난구조, 해양오염방지 및 해상방제 활동, 해양조사, 해양 정보제공, 항로표지 관리, 국제협력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일본 해상에서는 불법출입국, 밀무역, 해적행위, 불법어로 등 범죄행위가 극도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48년 5월 1일 해상에서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의 안전 확보, 해상범죄의 예방 및 진압도모,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해양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상보안청을 설립하였다.<sup>57)</sup>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미국 연안경비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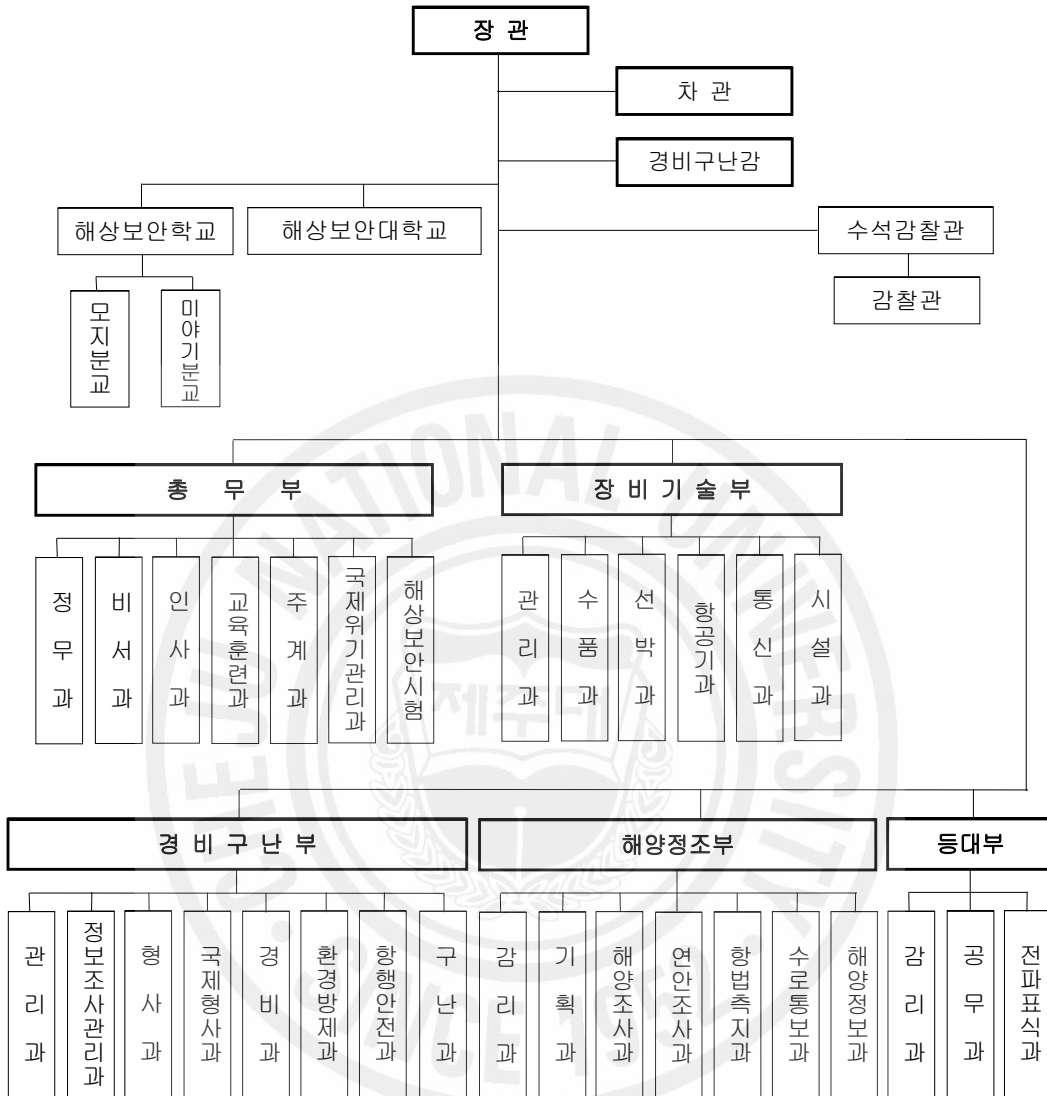
고 있다. 즉 태평양에서의 해난구조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즉시 대응체제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해난사고가 발생시 미국 연안경비대의 항공기가 수색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정의 구조를 하는 등 역할분담을 실시한 예가 있다. 또한 일본 해상보안청 함대의 열람식에 미국 연안경비대의 함대가 참가하고 또한 역으로 미국 연안경비대의 세레모니에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정이 참가하는 등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현재 해상보안청은 <그림 2>와 같이 운수성의 4개 외청(선원노동위원회, 해상보안청, 기상청, 해난심판청) 중의 하나이다.<sup>57)</sup>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본질은 일본 정부의 운수성(교통부)의 해상행정의 집행기구로서 해난구조, 해양오염 방제, 항로관리와 수로도지의 관리 및 연안 경비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 업무와 관련하여 해상보안청은 해상에 있어서 범죄를 수사, 진압 및 예방하는 경찰 기능을 장소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제한된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 해상 사법경찰권도 포함된다. 또한 국제 해양법협약에 의거하여 해상보안청은 연안국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57) 천창홍, 「해상보안청 책무와 현상」, 해양관리행정세미나, 해양안전학회, 2001, p. 58.

58) 海上保安廳, 「海上保安白書」, 大省印刷社, 2001, p. 24.

<그림 2> 일본 해상보안청 조직도



자료 : <http://www.kaiho.mlit.jp/>

1) 組織

일본의 해상보안청은<sup>59)</sup> 해상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의 보호, 법률 위반의 예방, 수사와 진압을 목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해

59) 해상보안청법은 소화24년 5월14일 법률 제58호에 의하여 발효되었다.

상보안청 장관으로 하고, 운수성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해상보안청 본부의 조직은 <그림 2>에서 보듯이 총무부, 장비 기술부, 경비 구난부, 수로부 및 등대부로 구성한다.<sup>60)</sup> 그리고 전국과 연안수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상보안관구를 두고 이곳에 관구 해상보안본부를 설치하여 소장사무를 분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안수역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근래 일본이 직선 영해법을 적용하면서 영해 수역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지방관구는 제1관구에서 제11관구로 나누며, 관구 본부에는 지방관구의 해상보안본부를 설치하여 해상보안청의 소장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지방관구의 본부 사무는 총무부, 경리 보급부, 선박 기술부, 경비 구난부, 수로부, 등대부에서 관장한다.

해상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의 보호 및 법률위반의 예방, 수사 및 진압을 위하여 다른 부서와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보안청은 경찰청, 세관, 기타 관계행정청은 상호연락을 유지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범인의 수사와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해상보안관은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범인을 체포할 때 또는 비상사변이 있을 때에는 부근의 사람과 선박에 대하여 협력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상 특별사법경찰로서 경찰작용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상보안관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서 선박에 입회검사를 할 수 있고 선장에게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여객과 선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해상보안관은 제복을 입고 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형사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다. 해상보안관은 그 직무를 합목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강제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거나 출항을 금지시키는 것
- ② 항로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지정된 항으로 회항시키는 것
- ③ 승조원, 여객 또는 선내에 있는 사람을 하선시키거나, 또는 하선을 제한하거나 혹은 금지시키는 것

60) 海上保安廳, 「海上保安白書」, 大省印刷社, 2001, p. 256.

- ④ 적하를 양륙시키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시키는 것
- ⑤ 선박이 검역 또는 조사를 받을 때에 또는 억류되거나 인명에 대하여 위험이 있을 때에 당해 선박과 타선 또는 육상과의 교통을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 2) 海上犯罪 團束

해상범죄 처리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상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과 법령의 이행을 중요한 전속적 사무로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범인의 수사와 체포라는 특별 사법경찰의 경찰작용을 다음과 같이 행사하고 있다. 해사관계, 어업관계, 형사범, 무역관계 위반, 출입국관계법, 불법입국사범, 마약 및 각성제위반, 전과법, 모래 채취법, 검역법 등 위반 등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처리한다.

해상보안경찰권은 일본에서 오직 경찰작용을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속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만 이를 보안경찰이라 한다. 보안경찰의 업무가 대부분 일반 경찰기관에 속하므로 행정경찰은 보안경찰의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찰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을 구별할 사실상의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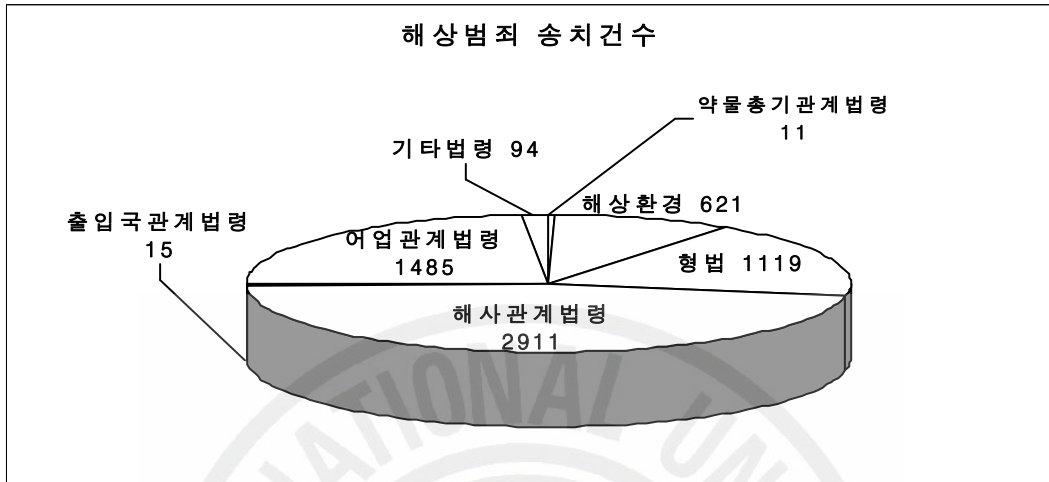
일본에서 보안경찰의 업무이나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적인 행정기관에 업무를 이행하여 처리하고 있다. 즉 일반 경찰기관이 담당하지 아니하는 예외로서 「과괴활동방지법」에 의한 과괴활동 단체의 조사와 규제는公安조사청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구호업무는 소방서가 전담한다.<sup>61)</sup> 그리고 해상의 법령이행, 해난구조와 해상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은 해상보안청의 업무에 속한다. 일본에서 해상보안청을 해상보안청법에서 규정한 해상경찰업무를 분석하여 보면 해상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주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보안경찰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 업무는 해상보안관이 집행한다.

해상보안청은 그 업무면에서 본다면 행정작용의 일부를 담당하고 동시에 범죄

61) 박용섭,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상보안관에 관한연구」, 해양관리행정세미나, 해양안전학회, 1998. 9, p. 8.

수사를 행하는데 <그림 3>과 같이 해상특별사법 경찰작용을 행하고 있다.

<그림 3> 일본해상보안청 해상범죄 송치건수(2005년)



자 료 : 일본 해상보안청, 「海上保安」, 일본 해상보안청, 2006, p. 60

일본의 행정경찰기관 중 방위청, 자위대, 해상보안청, 소방청,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등은 그 책무가 개인의 생명·신체의 보호·공안의 확보·치안의 유지로 되어 있어 일반경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sup>62)</sup> 국제범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경찰청과 공안조사청이 있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범죄는 해상보안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에 의한 수사활동 체제의 강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1년 4월에 본청 및 제1관구 해상보안본부, 제5관구 해상보안본부에 밀항, 밀수 단속 및 해적에 관한 업무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국제형사과를 신설했다. 그리고 2002년 4월에는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 및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에 국제 형사과를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에 국제 조직범죄를 단속하는 국제 조직범죄 대책기지를 신설했다.<sup>63)</sup>

62)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학문사, 1996, p. 215.

63) 日本海上保安廳, 「海上保安」, 2006, p. 60.

## 2. 中國 公安部

중국 공안부는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전국 치안업무를 담당하며, 부장(장관급)은 총리의 제청으로 전인대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중앙기구는 1청 1부, 28국, 4연구소, 2실로 구성되고, 4개의 직할시에 공안국이 설치되어 있다. 22개성과 5개 자치구에 공안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급 체계는 5등급으로 되어 있다.

변방관리국은 공안부 산하의 직속기구이나 성격상 인민 무장경찰부대조직으로 군 계급을 사용하며 업무의 중요성으로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이중 지휘를 받는 부서이다. 변방관리국은 국가주권수호, 해상범죄활동 예방 제지 및 수사,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선박·항공기·기차 입검 및 국경 경계관리, 중국의 국경지역 범죄예방 및 단속, 해상강도, 밀입국, 밀수 등 범죄활동 단속, 어선출입항 검사 및 3무(무선명, 무선박증서, 무선적항) 선박 단속 등이다. 이 조직은 후근부, 사령부, 정치부가 있는데 사령부 산하에 해양처, 정찰처, 정보처, 연해처, 변방조사처, 변방관리처가 있으며 이 중 해양처가 해상에 관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현 공안부는 1995년 2월 제8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에서 인민경찰법이 통과되어 주 임무는 사회치안질서유지, 호적, 교통, 소방, 변방지역, 출입국, 특종업종, 위험물품 등 관리, 형사수사, 간첩·반혁명분자와 기타 형사 범죄분자의 파괴활동저지, 범죄예방 및 검거, 외사공안 및 대외협력, 외사공안 업무와 대외협력사무, 각국 경찰인터폴과의 협력 업무를 하고 있다. 공안부 조직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중국 공안부 조직도



자 료 : [http:// www. gov. cn/](http://www.gov.cn/)

변방관리국은 국가주권보호, 출입국질서, 변경 연해지구의 사회 치안유지 및 법률에 따른 행정관리 강화, 정상적 왕래확보, 범죄단속 등을 통하여 개혁개방 정책과 현대화 건설을 지원, 차량, 선박, 항공기, 기차 등의 출입국검사 및 변방 관리지역에 대한 국경경계관리 작업, 북한, 미얀마를 비롯한 중국의 경계지역의 관리강화 및 홍콩, 마카오지역의 순찰강화 등을 통한 국경지역 범죄예방 및 단속, 선박척수의 증가와 출어어선의 생산다양화, 종사인원증가 등에 따른 출어 어선, 어민관리 및 선명이나 선박번호가 없는 선박, 관계증명서 미보유 선박, 선적 항이 없는 선박 단속 등 해상치안확보, 해상범죄예방 및 단속을 위한 해상순찰과 치안연락망 완비로 해상치안 확립, 변경지역, 해상 및 출입국 지역에 대한 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밀·입출국 사범 등을 단속하는 동시에 해상밀수, 해상강도, 절도 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 3. 美國 沿岸警備隊

USCG의 기본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790년 8월(독립선언 1년 후) 연방정부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에 세관 감시선단인 A Fleet of Cutters로 출발하였다(현재도 마약단속 및 밀수감시 업무를 갖고 있음). 1812년의 대영전쟁 때는 미 해군에 합병되었다가 전후에 원대복귀 하였고 1861년 남북전쟁에도 해군휘하로 참전하였다. 1876년에 Dobbin 호에 사관학교를 설립 1990년 현 위치(Arundel Cove, Maryland)로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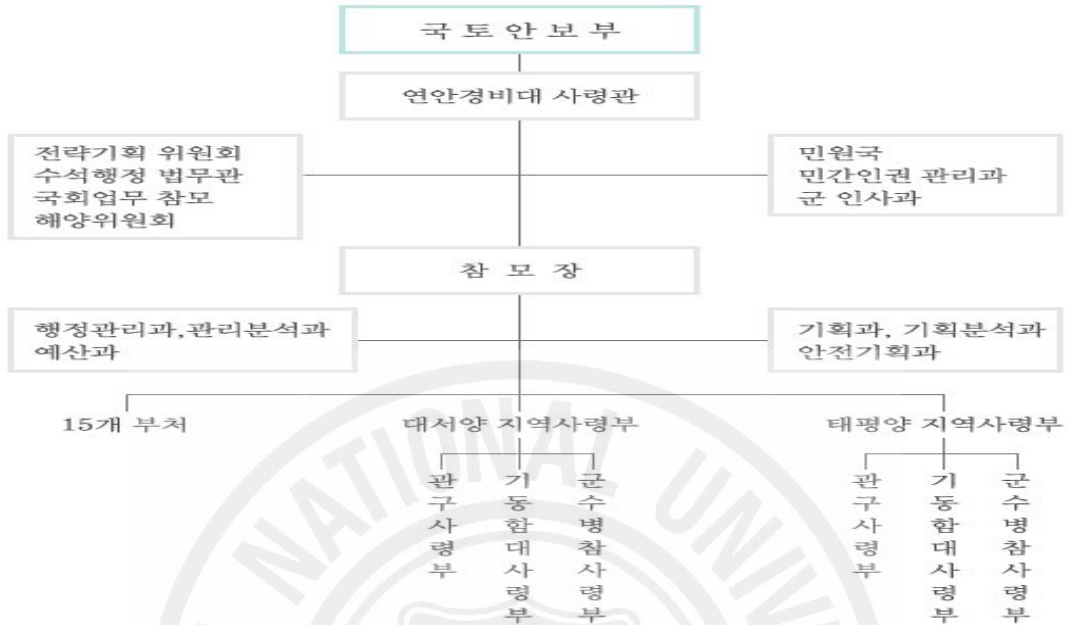
1902년 계급과 보수규정이 육군과 통일되었고,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을 계기로 빙산 순찰업무를 시작 1915년 1월에 인명구조대와 통합하여 USCG로 개칭되었다. 1차 대전 개전에 따라 1917년 4월에서 1919년 8월까지 해군에 예속되었다가 재무성에 복귀하였다. 1932년 3월 포경협정 발효에 따라 불법어로 단속업무를 시작하여 1936년 12월에 쇄빙임무가 부여되었다.

1939년 7월에 항로표지업무를 인수하고 1949년 6월에는 항만보안업무가 추가되어 1941년 11월부터 1946년 1월까지 해군에 편입되었다. 1942년에 항해 및 기선검사국을 통합 1958년 6월에 AMVER제도를 채택하였다. 1967년 4월, 177년간의 재무성 소속에서 신설된 운수성으로 소속을 옮겼다.

1970년 3월 수질보호법의 발효로 오염 및 방제업무가 추가되어 기구가 크게 팽창하였다. 1971년 연방 보우트 안전법이 발효되어 위락용 단정관련업무가 증가하였고, 1976년 4월 200해리 경제수역선포로 USCG의 순찰 및 어로단속업무가 팽창하였다. 1981년 9월 불법이민단속을 위한 정선권이 부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64)</sup>

64) 1. 임전태세완비(Defense Readiness) a) 끊임없는 훈련, b) 병기, 보급, 통신의 해군과의 통일, c) 평시 해운방어지역(Maritime Defence Zone) 방어담당, 전시 항만과 200해리 전관수역을 방어 하기 위한 작전수행, 2. 해양관련법의 집행(Maritime Law Enforcement), a) 200해리 전관수역 및 어자원 보호구역의 자원보존, b) 밀수, 마약, 밀항자 단속과 항법위반 단속, c) 타기관의 법집행의 해상에서의 보조, 3. 해상안전의 확보, a) 항로표지(47,000개의 연반표지관리와 44,000개소의 사설 표지감독), b) 위락용 보트 안전관리(5,100만의 해상 위락객과 1,640만 척의 보트의 안전관리), c) 선박검사(통산 38,000척의 검사와 13,000건의 사고조사) d) 해기면허관리(연간 25,000명의 서류관리, 8,000명의 신규 및 상급 면허발급, 11,700명의 면허갱신). 해양경찰청 기획 법무계, 「외국의 해양경찰제도 미국편」, 태양당인쇄사, 2000, pp. 19~30.

<그림 5> 미국 연안경비대 조직도



자 료 : <http://www.uscg.ni>

#### 4. 러시아 國境守備隊

러시아인 경우 해상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범죄행위를 국경수비대가 담당하고 있고 일본은 해상보안청이, 중국은 변방관리국에서 다른 기관과의 횡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국경수비대는 대통령직속기구(장관급)로 과거 KGB 산하기관이었으나 1991년에 분리되었다가 2003년 대통령령에 의해 KGB의 후신격인 FSB(연방보안국) 산하기관으로 재편되었으며, 현재 본부는 모스크바에 있고 10개의 지역사령부와 15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경수비대 중앙조직은 <그림 6>과 같다.

러시아는 1995년 4월 과거 검찰에 이관했던 KGB시절의 수사권을 되찾아 과업, 테러예방, 부정부패와 마약거래, 불법무기 및 기타 범죄 등 모든 조직범죄에 대하여 전담하게 하는 현재의 정보기관인 FSB를 발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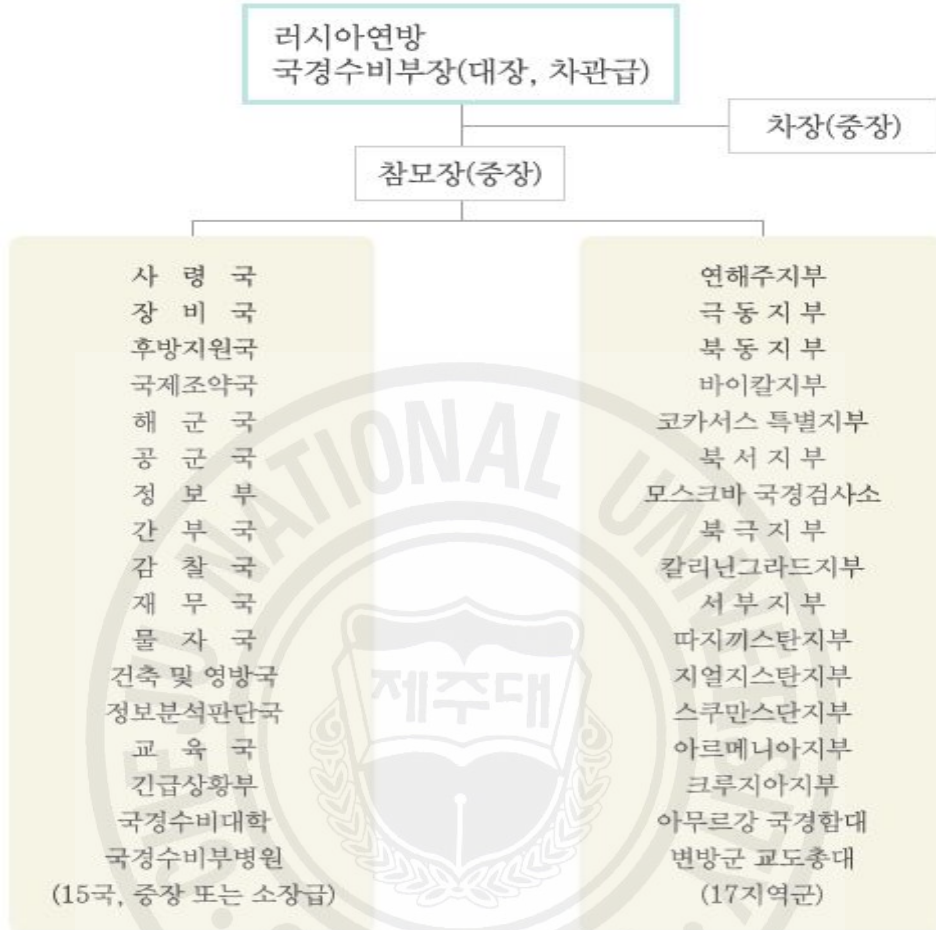
소속 산하기관으로 국경수비대는 육상, 해상, 항공을 관할하는 준군사조직이다.

국경수비대장은 3성 장군(대장급)이고, 각 지역사령관은 2~3성 장군(중장, 대장급)이며 조직은 국경수비부장, 차장, 참모장, 15개 국, 14개 지역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경수비부 대학, 국경수비부 병원이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첫째, 국경경비 및 검문소(출입국관리업무) 운영, 둘째,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해상경비, 셋째, 어업지도단속, 어로보호감시(해양생물자원 보호), 넷째, 국경을 통한 밀수, 밀입국 등 단속, 다섯째, 해·육상을 통한 마약, 총기, 향정신성물질 등 밀수 단속, 여섯째, 국가 국경보호(양자간 협의에 근거), 일곱째, 기타 해외 러시아 외관 보호 및 첩보방첩활동 등을 수행한다. 이들의 기능을 우리나라 중앙부처 조직에 비교하여 설명하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 보건복지부, 관세청, 해양수산부, 육·해군 경비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준군사조직으로 이해된다.

개편된 FSB가 갖게 되는 특권은 실로 막강하다. 예를 들어, FSB는 자체 감옥을 설치할 수 있고, 수색영장 없이 범죄혐의가 있는 각종 단체나 기업, 주택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 해외정보활동을 위하여 외국의 단체나 기관에 스파이를 침투시키거나 기업 또는 단체로 위장시킨 지부를 외국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자체적으로 스페츠나츠(특수부대)를 운용할 수 있다.

FSB에 주어진 특권 중 가장 큰 것은 다른 어떤 기관도 FSB에 대한 법적 감독권을 가질 수 없게 했다는 점이다. 하원이 FSB활동에 대한 비공개청문회를 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지만, 예산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검찰 등 관계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관계자를 서울에 상주시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FSB도 정보요원들을 한국에 파견하는 한편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활동을 위하여 국가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6> 러시아 국경수비대 중앙조직



자료 : [http:// www. fps. ru/](http://www.fps.ru/)

## 第 5 章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 管理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第 1 節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管理 問題

#### 1. 漁業協定の 管轄權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기존의 해양관할권과 성격이 다른 새로운 해양관할권제도가 탄생되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각종 국가 관할권행사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은 동해에서의 중간수역제도, 제주도 남단의 중간수역제도 및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과 독도를 동해안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서 독도 주변수역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란과 독도 주변수역의 법적성격과 12해리를 침범하는 일본 선박의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한·중 어업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제도에 입각하여 마련되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관리된다.<sup>65)</sup> 그러나 양국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교섭에 의하여 경계가 획정되어야하나 기본적인 입장차이로 해결되지 않은 서·남해 일정수역은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어업질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2.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 搜查機關의 役割

국제범죄의 증가로 나타나는 국제 치안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계국과의 공조수사, 국가간의 범인인도 및 국제 치안체제를 그 속성으로 볼 때 국제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예방, 체포가 주요업무가 될 것이라 하겠다. 해외교포

65) UN해양법협약은 1982년 12월 10일 발효되었는데, 동 협약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해양에 관한 헌법적 성격을 가진 법이다. 여기서 영해의 폭은 12해리이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신설, 심해저 부존광물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정의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하고 연안국의 관할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시의 허가 등을 규정,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치 등 해양관련 분쟁해결의 제도화를 집대성한 협약이다.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실무지침서, 국제법규, p. 1.

가 많은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교포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우리 공관에 대한 공안 주재관 파견역할이 중요하다.<sup>66)</sup>

우리나라에서의 국제해상범죄에 대한 수사체제는 경찰, 검찰 등 법집행기관을 중심으로 그 역할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경찰, 검찰, 관세청 등이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사항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과 작성을 통한 정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기관들의 주요업무형태를 해양경찰,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검찰, 관세청,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海洋警察

해양경찰은 <그림 7>에서 보듯이 본청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3개 지방청과 13개 해양경찰서의 외사계에서 국제업무와 관련된 밀입국, 밀수, 마약 등 해상범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에 해외 주재관 3개소를 두고 3명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인 경우 2005년 12월말 기준 해외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은 <표 19>에서 보듯이 21국에 32개소, 재외공관에 32명이 파견되어 있다. 그리고 영국, 중국, 독일 등 10개 주요 공관에 총경급 경찰주재관을 증원한 상태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그동안 국제 해상범죄에 대한 조직자체와 이론 정립이 경찰청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외국주재관이나 국제해상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에 한계성이 있다.

### 2) 國家情報員과 法務部

국가정보원은 국제 조직범죄에 관련된 즉 마약, 테러, 밀수, 밀입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여 각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에서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및 체류 외국인의 활동 상황을 살펴 각종 출입국관련 사범을 적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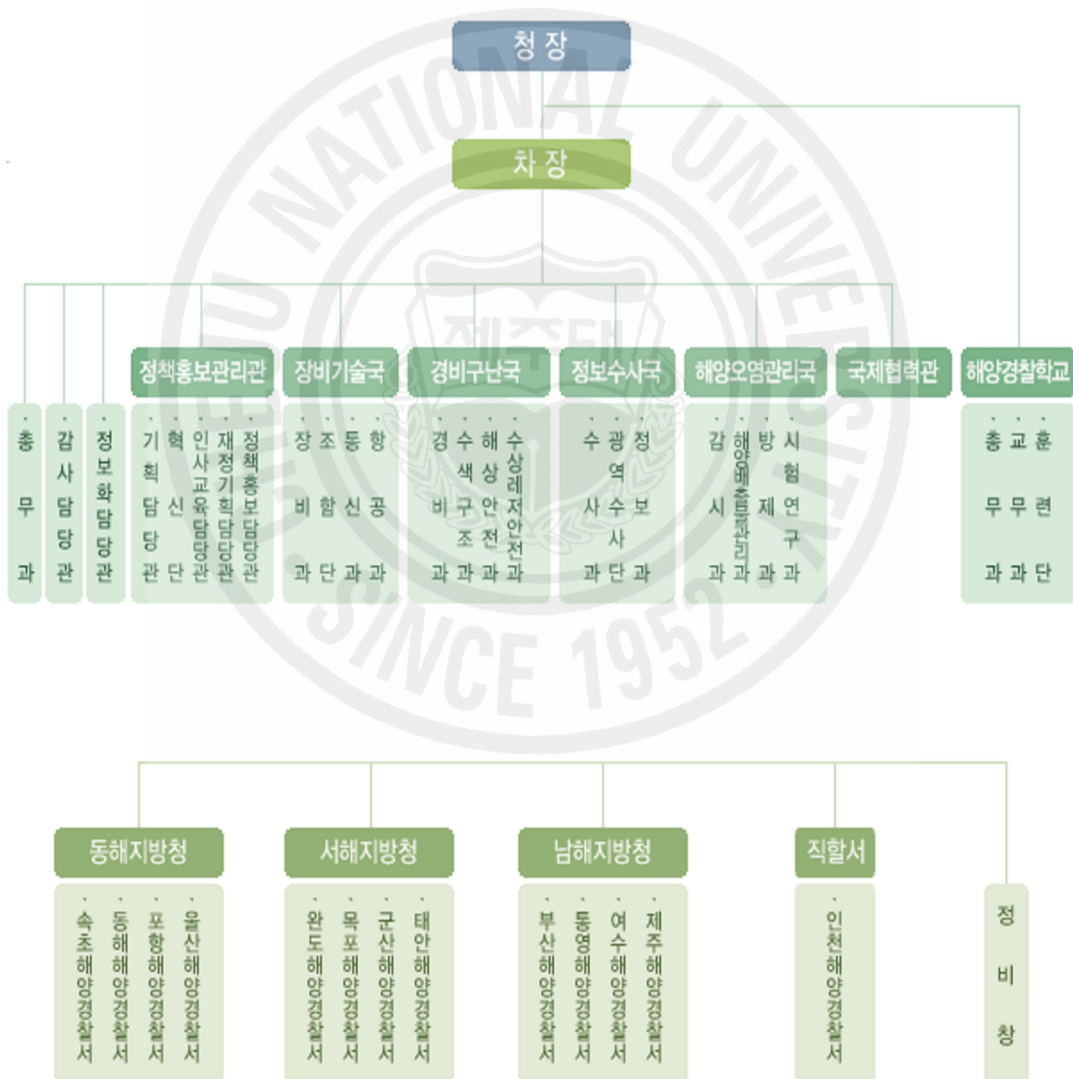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의 범위는<sup>67)</sup>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

66) 송희년,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p. 45.

67) <http://www.lawandbusiness.com>.

전북·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를 기획·조정한다.

<그림 7> 해양경찰청 조직도



자 료 : <http://www.kcg.kr>

### 3) 警察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민족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첩보의 수집 및 수사기능을 가진 외사경찰의 업무는 1960년대 양적팽창을 시작으로 1970년대 전문성 심화기를 거쳐 1980년대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되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1980년대 외사경찰의 조직변화는 1982년 3월 30일 외사3계에 테러반을 설치한 때부터 시작 되었다.<sup>68)</sup>

경찰청은 외사국과 지방청에 외사과와 각 경찰서 단위에 외사계를 두고 국제 범죄와 관련된 업무 즉 마약, 외국인 범죄 그리고 국제 형사 경찰기구와의 협조를 위해서는 <표 19>과 같이 각국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국제 해상범죄에 대한 정보획득은 현지 활동보다는 주로 국제 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의존하는데다 민생치안에 대한 업무량의 폭주로 실질적 수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표 19> 경찰청 해외주재관 파견현황

21개국	32개소	경찰주재관(36명)
북 미(2)	5	워싱턴, LA, 뉴욕, 시카고, 토론토
중 국	6	북경(2), 심양(2), 청도(2), 홍콩, 청두, 광저우
일 본	3	동경, 오사카, 나고야
유 럽(4)	5	영국, 파리, 독일(본),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아시아(6)	6	마닐라(2), 방콕, 자카르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남 미(4)	4	멕시코, 쌍파울로,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기 타(3)	3	시드니, 뉴질랜드, 케냐

자 료 : 경찰청, 「경찰청백서」, 2006.

68) 경찰청, 「한국경찰사」 제4권, 경찰청 역사편찬위원회, 1994. p. 1195



#### 4) 關稅廳, 檢察

관세청과 검찰은 국내공항, 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마약, 밀수수사를 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한정된 수사권으로 인하여 업무영역이 제한되는 데다 해외협력도 관세분야가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up>69)</sup> 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공소권을 갖고 있으며 마약수사를 비롯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 수사공조에 있어 허점과 인력부족 그리고 장비의 낙후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3. 搜查共助體系의 限界

#### 1) 搜查 構造想 問題點

서부유럽 등에서도 마약범죄는 계속 문제영역으로 남고 있다.<sup>70)</sup>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법무부 등에 분산으로 인한 국제범죄 정보수집에 필요한 주재관 기관별 주재로 인한 부처 이기주의로 인력과 예산낭비는 물론 공조의 어려움과 장기적인 공작, 감시,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 특히 독점적인 해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주요 해외 정보제공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독점적으로 정보를 공급하고 신뢰도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위험성이 상존하여 있다. 그

69) <http://lawnb.com/lawinfo/law>

70) 김우현, “서구경찰”, 「외국경찰제도 연구」, 치안본부, 1989, p. 550.

리고 정보기관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보가 차단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된다.

정보출처가 많을수록 정책결정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많아지며 믿을 수 없는 출처의 정보가 확인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출처는 정보공동체의 융통성과 적응력을 강화시키지만 대가가 비싸고 특수한 경우 정보유통과 정책결정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sup>71)</sup>

## 2) 搜查技法에 있어서의 限界

국제 해상범죄로 검거된 조직원의 대부분은 하부조직원이며 조직관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단지 행위자만 처벌하는데 그치고 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 범죄의 상층 구조를 기소하기 위해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대신 그의 형을 경감해 주는 이른바 ‘플리바겐’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

국제범죄의 피해자나 참고인은 범죄조직으로부터 신상의 위협을 이유로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그 범죄입증이 쉽지 않다. 이외에 증인보호의 문제와 비호세력의 존재 때문에 수사자체가 외압에 의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전문요원과 첨단장비의 부족이다 전문화된 수사요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첨단장비 또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나날이 지능화, 첨단화 되어 가는 국제범죄의 범죄기법에 대항할 첨단수사기법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 第 2 節 海洋管轄權內 海上犯罪의 管理에 對한 改善方案

### 1. 漁業協定 管轄權行事的 根據 마련

국제법은 연안국의 국내법령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외국선박을 공해상까지 계속해서 추적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

71) 허경미,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1988, p. 179.

역법에는 추적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sup>72)</sup> 그러나 일본인 경우 신영해법에서는 내수 또는 영해에 관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추적권에 관계된 공무원의 직무집행 및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수 또는 영해로부터의 추적에 관한 일본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3)</sup>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의 추적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례와 같이 법집행에 난맥성을 드러내고 있다.<sup>74)</sup>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나포에 나섰던 해양경찰이 선원들에게 집단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도주했던 어선과 선원들을 중국 산둥성(山東省) 룡청(榮成)시에서 검거, 폭행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 경찰함정이 불법선박을 추적 나포 할 때 공무집행방해 행위, 임검권 행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 폭력 및 살상행위, 불법선박을 나포하여 연행한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 등에 대한 범죄성립여부와 처벌근거 규정과 대응책 마련이 미비하다.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주권 국가간의 해양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확한 해상경계는 물론 국제 법률적인 근거 뒷받침과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동안 어업협정에서 해양경계선을 마련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협정하여 불법어업행위에 대응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차후 어업협정에 있어서 법률과 협정을 통해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과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 단속과 해양주권확보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 [ 사 례 ]

2002년 해양경찰에 검거된 뒤 난동을 부리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고 중국으로 도주했던 80 t 급 저인망 어선 요령어 0011, 0012호 등 2척의 어선이 검거됐음을 전달받았다

72) 김정건, 앞의 책, p. 343.

73) 해양경찰청, 「한·중·일 비교법령집, 일본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법률」, 국제문화사, 2003, p. 401.

74) 해상검문검색근거는 UN해양법협약 제110조 임검권, 동법 105조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나포, 동법 제106조 충분한 근거 없는 나포에 따르는 책임, 헌법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지위, EEZ 내 외국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은 UN해양법협약 제56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제73조 연안국 법령의 시행, 제11조 추적권, EEZ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 제23조,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 제3조,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등이다.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실무지침서, 국제법규, pp. 14~15.

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침범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서해특정해역 침범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검거과정에서 해경이 쏜 총알이 선상에 부딪히면서 튀 유탄에 난동을 부리던 선원 한명이 발목 부상을 입는 등 모두 3명의 선원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전해왔다. 해경은 그러나 당시 선명을 지우고 나타난 괴선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 선원들의 경찰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현재 함정근무 경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총 359정 외에 육상 근무 해양경찰관이 갖고 있는 359정을 추가 지급해 경비함 245척에 모두 718정의 권총을 지급,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충격총 190정, 전자충격봉 365개, 3단봉 및 진압장봉 각각 500개, 사과탄 등의 진압장비는 물론 경비함과 단속용 보트와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송·수신 장치가 내장된 안전헬멧 1천5백75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할 때는 해군, 어업지도선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을 방해할 경우에는 무기 사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sup>75)</sup> 이와 같이 한중어업협정 이후 2005년 5월 24일에도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27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선박 선원들이 검거하려던 공무집행중인 경찰관 4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히고 해상에 투기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 2. 國際海上犯罪 專擔機關 新設 및 搜查協力 관계의 強化

밀입국의 경우 최근에는 산업연수생 등 합법적인 입국이 쉬워지고 해상경계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과거보다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한·중 간 임금격차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해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에 외사수사대를 국제범죄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해상범죄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경쟁력 있는 해외정보수집 능력에 뛰어난 기관이 되어야 하므로 국제적 협력기반의 확충을 기본으로 전문인력, 장비 등을 보유한 전담수사기관 신설이 요구된다. 그러한 이유로 각 기관에서 해외정보 수집을 위해 여러 나라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저마다의 실적과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판단으로 필요기관과의 정보공

75) <http://newws.itines.co.kr>

유가 안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는 점을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 그리고 관세청이 수사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전속의 전담기구 또는 국가 전반적인 국제범죄 대응에 필요한 특별기구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국가정보원에 국제 조직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독립적인 새로운 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재정상, 인력상 매우 어려우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조직범죄의 상황을 볼 때 새로운 기관의 신설보다는 각 부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ask Force' 형태의 특별팀을 조직하는 수평적 관장이 요구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제 조직범죄 단속 예방에 관한 정보공유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간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난 합동기관으로 인력을 확보 분산 배치하여 낭비요인을 없애야 한다. 이는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설정에 있어서나 법적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 지배의 원칙, 헌법규범을 침해하는 것을 제외하고<sup>76)</sup>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주권확보 차원에서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범죄의 국제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국도피 피의자, 한국의 국외범 피의자 및 국제적 상습범죄자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함과 함께 외교·출입국관리국 등의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범죄현상은 정교화, 조직화, 은밀화 되어 통상적인 수사방법과는 다른 고도의 기술성,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등 수사기관은 동일한 은밀성으로써 범죄조직에 대해 최대한 은폐하면서 핵심적인 범죄정보와 증거들을 적극 획득할 수 있는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특수수사 기법도 요구된다.<sup>77)</sup> 해외정보수집이 용이치 못한 수사기관을 위해 해외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국제해상범죄에 총체적으로 대처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다.

국가정보원 등이 구축하고 있는 전 세계 해외정보망과 통신시설 및 과학장비

76) 최대권, 「법과 사회」, 서울대학교 출판사, 1992, p. 13.

77) 박주원, 「범죄정보체제론」, 수사연구사, 1999, p. 386.

등을 경찰, 해양경찰, 검찰 그리고 관세청 등의 수사기관이 모두 공유케 하여 날로 지능화, 첨단화되어가는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사범을 단속하는 주체가 되는 해양경찰의 외사기능을 강화하여 인원을 늘리고 국제범죄에 대한 대처훈련 실시로 국제 해상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검찰, 경찰, 해양경찰,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그리고 국가정보원 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소위 ‘대 국제 해상범죄 종합수사팀’ 을 조직하여 상호 협력하는 공조체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 3. 科學搜查技法 導入과 優秀한 外事警察의 育成

새로운 신종범죄의 대책으로는 수사의 과학화를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왜냐하면 신종범죄는 사회생활의 고도화를 악용하는 것이 중심이 되므로 그에 대한 수사기법도 과학적 지식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sup>78)</sup>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국제범죄의 특성에 맞게 좀더 현대적이고 첨단화된 장비를 도입하여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국제범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범죄에 대한 컴퓨터 자료검색, 도청이나 잠입수사, 합정수사, 불법수익 및 자금세탁의 축적에 있어 좀더 그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독일에서도 1997년 조직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들의 가택에서 정보를 채취하기 위해 전자감시 장비(도청장치)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돈세탁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일시 압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sup>79)</sup>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허용 한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범죄환경의 악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수한 외사경찰 육성

78) 이영창, 「외국경찰제도 연구, 일본 경찰편」, 치안본부, 1987, p. 261.

79) 조선일보, 1997년 8월 30일자.

이 필요하다. Parsons에 의하면 조직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체계 또는 인간집단이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위와 역할 체계로서의 조직은 하나의 공식조직체를 의미한다.<sup>80)</sup> 조직의 힘은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의 자질과 큰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 조직역시 수사요원이 갖는 자질의 정도와 수사 결과는 비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국제범죄에 대한 사전정보 뿐 아니라 유래와 내막, 수사대상 조직의 현황, 기존 범죄유형과 사법처리 결과 등 국제범죄의 실체에 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전문화된 수사요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장기근무를 장려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제해상범죄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수사관들은 우선 해상범죄의 국제화를 고려하여 외국어 구사능력과 첨단과학, 의학 등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사능력 향상 차원에서 외부인력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경찰수사연수소 및 해양경찰학교에 국제범죄 수사과정과 외사실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우수전문수사요원을 집중 양성하여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사회의 변화, 범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외사경찰 육성과 수사간부의 지휘능력 향상에 한층 더 투자가 요구된다.

#### 1) 外事警察 專門要員 養成

외사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외사활동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적인 안목과 전문능력을 가진 외사 전문요원 양성은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경찰청인 경우 2005년도에 미국 CIA와 협조하여 일정수의 외사 방첩요원을 선발하여 2주간 국제 대테러교육을 실시 국제 테러정보 분석과 테러혐의자 수사기법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경찰종합학교에 외사정보 실무과정, 국제범죄 수사과정, 국제보안 실무과정을 개설하여 마약·밀수·돈세탁 등 외사사범 수사

80) 김영호·양은심·이순영·주수길,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양서원, 2005, p. 346.

능력 향상 및 국제성범죄 수사능력강화 전문화 교육실시와 아울러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외국어교육, 정기 어학검정을 실시하는 등 경찰관의 외국어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해양경찰인 경우도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과 전문능력을 가진 외사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정보대학원, 경찰종합학교 등 유관기관을 통한 위탁교육과 외사경찰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은 물론 현장학습을 통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변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외사경찰관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표 20>에서 살펴보듯이 수적, 양적으로 경찰청에 비하여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표 20> 외사경찰관 해외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장 기	34	2	1	2	1	5	4	9	3	7
단 기	26	1	2	2	1	-	1	12	7	-

자 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6.

해외주재관 파견 관련해서도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심화에 따른 일본 우익단체 선박의 독도 상륙기도, 일본 EEZ 내 우리어선의 나포행위 그리고 중국의 이어도 공정문제, 말라카해협에서의 해적행위 빈발 및 마약, 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파견이 절실한 입장이다. 이와 같이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에 의한 범죄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주재관 부재로 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업무협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경찰은 현재 선박왕래 등 해양경찰업무가 많은 중국에 이어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러시아 등지에 전문성 있는 해외주재관 추가 파견이 시급해지고 있다.



## 2) 警察官 外國語教育 強化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관 개개인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양경찰에서는 경찰종합학교, 부산해양대학교, 중앙공무원교육원, 해양경찰학교에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전문화 과정을 개설하여 일선 경찰관에 대해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업무에 필요한 영·일·중·러 등 외국어 자격자를 정기 채용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지만 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청인 경우 장단기 구분 해외교육은 <표 21>에서 보듯이 연차적으로 해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21> 경찰청 의사경찰관 해외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장기	105	16	9	8	13	11	12	13	13	10
단기	71	15	5	8	6	10	9	5	6	7

자 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6년.

## 3) 外事資料室 運營

외사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도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에 외사자료실을 설치하고 해외주재관 및 외국의 해양경찰기관을 통해 수집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 필요한 외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실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각종 외사자료의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자료의 D/B화를 추진하여 향후 일선 경찰서까지 시스템 검색 단말기를 활용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필요한 외사자료를 24시간 조회 열람할 수 있게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의 경찰관이 업무수행 중 수집한 각종 외사업무 관련 자료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집의 다양화·국제화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의사자료실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해양경찰의 국제성범죄 대응역량 강화 및 외국 해양경찰과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위해 의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海洋警察廳 外事警察 機能 強化

해양경찰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3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를 비롯한 동·서남아시아 5개국 및 미국, 캐나다 등 해상치안기관들과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매년 정례회의 및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제범죄에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범죄가 국제화·광역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상범죄를 국가간 긴밀한 협조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없게 되었다.

해양경찰에서는 주변국과의 정보교류와 공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다자 또는 양자간 해상치안 기관장 정례회의 및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의를 통해서 반인류적 범죄인 해적행위와 국제성해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합동훈련과 그리고 기관 간 인적교류 활성화와 범죄정보 수집 및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현지주재관 파견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본과의 양국 해상치안기관은 1991년 체결된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을 바탕으로 합동훈련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주요내용은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른 해상교통사고 대응방안, 불법어로, 밀수, 밀입·출국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체제 구축이며 이후 국제성 범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이행이 바람직하다.

중국과의 정례회의도 2005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여 다목적 해상합동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밀·입출국 방지대책회의와 국제성범죄 전반에 대한 협의체로 확대 격상시켰으나 중국어선이 우리 측 EEZ, NLL에서의 불법조업 단속시 공권력에 저항 또는 도주선박에 대한 상호통보, 처벌체제 확립 요청과 양기관간 정보교환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지방관서간 연락창구 개설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국제협력관을 외사국으로 재편하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 5. 國際테러 豫防活動 強化

문명의 발달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스파이 활동과 지역, 인종·이념 갈등으로 인해 당사자국간의 보복차원에서의 국제테러가 육지는 물론 해상을 통해 발생함으로써 인해서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지난 1970년 12월 17일 발효되었다.

본 협약에는 인질억류행위를 방지하고 기소 및 처벌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로 인질억류범에 대한 살해, 상해, 계속감금, 협박자, 기도자, 가담자에 대한 규정과 혐의자가 자국 내에 있는 경우 형사 또는 인도소송절차의 제기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국내법에 의거 구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범죄인의 인도 및 인질억류 범죄혐의자를 적발하여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 없이 국내법 절차에 의거 기소할 수 있다.<sup>81)</sup>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국제 테러 혐의자들이 국내에 잠입할 가능성은 항상 잠재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제 테러 혐의자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폴과 해상치안기관과 국내외 정보·수사기관에서 테러 관련자 명단을 공유하고 입국심사 및 해상 검문검색 시 사전차단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해상관문인 부산·인천·광양 항만 등은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항만으로 안전 및 보안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외사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항만에 외사요원을 증원 정보수집 및 수사기능을 강화하고, 항만입국장에 경찰심사대를 설치·운영하여 국제테러혐의자 입국을 차단하고 CIQ주 지역 내 돌발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유관기관 간에 공조체제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테러조직과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색출과 이들의 특이 동향을 파악 테러의심 첩보 입수시 기관별 메뉴얼에 의해 관련자들의 신속한 검거 및 행적파악 위해 형사사법 정보망(출입국 사실검색 기능)을 일선 경찰서 및 항만분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81)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실무지침서」. 국제법규, p. 5.

## 6. 國際刑事 司法共助體制(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 強化

### 1) 國際刑事 司法共助 體制

국제화에 따른 국가간 상호 의존성의 증대에 따라 국제범죄의 탈 국경화가 심화되면서 범죄의 진압을 위한 공조의 필요성이 국제적인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을 통하여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대처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1988년 범죄인인도법<sup>82)</sup>을 제정한데 이어 1991년 3월 8일 국제형사 사법공조법을 제정하였고, 외국과의 형사 사법공조조약체결<sup>83)</sup>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제형사 사법공조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수사, 기소,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형사 사법상 협조를 말하는데 협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용되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국내 수사구조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최고의 범죄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가와 해적행위가 많은 말라카海峽에 속한 인도지역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조약, 집행의 인수와 청구를 포함하는 외국 형사판결의 집행조약 그리고 형사소추의 이송 조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등 국제형사 사법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국제범죄의 국내침투가 현실화 되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는 절실하다 할 것이다.

### 2) 海洋警察 인터폴 共助 위한 機能強化

국제범죄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국 인터폴 및 해외 주

82)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현황(1998년 6월 10일 현재),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1998, p. 697.

\* 발효 중인 국가(7개국) : 호주, 캐나다, 스페인, 필리핀, 파라과이, 칠레, 멕시코

\* 체결국가 :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 가 서명국가 : 태국

83) 경찰청,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1998, p. 698

재판 등으로부터 수집된 각종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국제범죄 정보관리시스템」을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운영개시 하고 있는 것을 해양경찰과 공유하여 국외 도피사범·실종자·우범자·장물 등 인적·물적 사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는 등 국제 범죄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최근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범죄의 예방·수사, 재판, 집행 등 형사사법의 전 단계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갖는 국제성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성 범죄들은 외국의 도움 없이는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국과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2006년도 해양경찰에서 국제 공조현황은 <표 22>와과 같이 모두 92건이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가 54건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각각 16건, 기타 6건이다<sup>84)</sup> 유형별로는 <표 23>와 같이 밀·입출국 1건, 실종변사 17건, 선박수배·불법어로 14건, 기타 60건으로 중국과는 밀입국 및 선박수배 관련이 대부분이고, 일본은 밀·입출국 및 선박수배·기타 사건관련 정보제공 그리고 러시아는 범죄용의 선박관련 정보교환 및 선박수배이며 기타 국가와는 실종변사 및 관련자료 통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표 22> 연도별 국제형사 공조 현황

연도별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818	28	92	102	108	55	77	88	82	94	92

자 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7, p. 258

<표 23> 유형별 형사공조 현황(2006년)

구분	계	밀수	밀입·출국	선박수배 (총돌·침몰)	실종(변사)	불법어로	정보교환
건수	92	0	1	14	17	0	60

자 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7, p. 258.

84)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7, p.258

이처럼 국제해상범죄에 대한 국가간 공조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옛날에도 고구려시대에서 여진족 침략과 남서해상에 송나라 상선의 왕래, 송·왜인의 해적선에 무기와 보물을 빼앗은 일을 해상순검선이 맡아 하였다.<sup>85)</sup> 이때도 해상을 통한 무역과정에서 해양관할권에서의 범죄행위를 경찰에서 담당하였던 점으로 볼 때, 현대에 이르러서도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사범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주변국 해상치안기관과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형사공조유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

85) 김형중, 「한국중세경찰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p. 216~217.

## 第 6 障 結 論

최근 수산자원보호와 식량 확보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한·중·일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로 바다의 경제 블록화와 인류의 교역을 위한 해상교통로 확보로 이어져 국가안보의 경쟁력과 국익창출에 필요한 정보수집의 대상으로 바다를 제 2의 국토로 선점하려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질서재편, 북한의 핵실험, 남북한관계에 대한 한미 동맹의 재정립 등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방, 외교 문제로 모든 관리가 해양관할권내에서 재편되고 있는 현실이다.

21C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해상교통발달 그리고 동유럽과 러시아 등의 체제 변화로 범죄기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해상을 무대로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거래, 해적행위, 노예수송 등은 만 인류의 적으로 간주되는 범죄행위와 어업협정위반 이외 조업선을 위장한 밀입국사범이 최근 신종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는 해상의 광역성과 선박을 도구로 이용하는 수단성과 범죄가 완성되면 거대한 과급효과 발생하게 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관할권 내에서의 모든 사범의 범죄양상을 보면 그간 국제 범죄조직에 의한 해적, 밀입국운송은 한국인이 일본행, 중국인(조선족, 한족)의 일본·한국행, 북한체제 변화로 한국으로의 해상탈출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인들은 수산물 거래와 취업을 위장한 한국, 일본, 중국에 잠입하고 있다.

각국 해상관할권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워낙 넓은 바다의 면적과 기상이변 등 물리적 현상으로 이를 단속하는데 한계성과 국가간 정보공유 부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화, 지능화 되어가는 해상범죄를 검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사체계상 문제점과 이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기관과 외사경찰의 기능측면에서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해보았다.

첫째, 해양관할권내 해상범죄 전담기관 신설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제 범죄수사의 특성을 고려 해외 정보수집을 위한 국제 협력기반 확충과 전문인력, 장비 등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전담 수사기관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수사협력 관계의 강화이다. 외국의 도피 피의자와 한국의 국외범 피의자 및 국제적 상습범죄자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는 해외정보 주체인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가 바람직하다.

셋째, 과학수사기법과 우수 외사경찰육성이다. 새로운 신종범죄와 국제간 원활한 범죄대책은 무엇보다도 수사의 과학화와 범죄의 특성에 맞는 현대적이고 첨단화된 장비확충과 국민의 신뢰와 적정수사를 위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사경찰육성이 요구된다.

넷째, 해양경찰의 기능을 강화 해야한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예방과 단속은 해양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그 만큼 많은 임무를 맡고 있다. 여러 국가의 해상치안 교류협력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국제협력관 기능을 외사국으로 개편·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국제테러 예방활동 강화이다. 문명의 발달과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 인종, 이념갈등 관계에서 당사국간의 보복차원에서 국제테러가 육지는 물론 해상에 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대테러 예방을 위한 여객선, 화물선 등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국제 형사사법공조체제의 강화이다. 해상범죄가 범죄단체조직과 연계하여 해상을 무대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국간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체와 조약을 통한 대체방안이 요구된다. 국제범죄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한 ICPO를 적극 활용하는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새로워지는 신종 국제범죄에 정보수집, 수사체계의 개선, 국가간, 국내기관 간 업무의 일관성을 위한 수평적 관계 유지로 국제해상범죄에 생산성과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 參 考 文 獻

### 1. 國內 文獻

- 경찰청.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1998.
- 경찰청. 「경찰청백서」. 경찰청. 2006.
- 경찰청. 「한국경찰사」. 제4권. 경찰청역사편찬위원회. 1994.
- 김병준.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1호. 2003.
- 김우현. . 서구경찰. 「외국경찰제도 연구」. 치안본부.1989.
- 김영호· 양은심· 이순영· 주수길.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양서원. 2005.
-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1998.
- 김진현. 「해양화 선진화의 길. 나남 출판사. 1998.
- 김 현. 「해양경찰행정수요 분석과 기능정립방안」. 해양경찰학교교재. 2005.
- 맹운재. 「수산관계법규」(어업자원보호법). 부연사. 2006.
- 박주원. 「범죄정보체제론」. 수사연구사. 1999.
- 백진형. 「우리의 해양관할권과 그 관리방안」. 해양21세기. 나남출판사. 1998.
- 송희년.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 우병수. 「실무해사법규 하」. 경안기획. 1996
- 이영창. 「외국경찰제도연구 일본 경찰편」. 치안본부. 1987.
- 이건호(역). 「체제변환 국가의 범죄현상」. 수사연구사. 2004.
- 장경학. 「별률용어사전」. 법존출판사. 1984.
- 장인식, 「공해상선박충돌사고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학교교수요  
원논문, 해양경찰청. 2005.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학문사. 1996.
- 조충환· 양건, 「스파 형법」. 박문각. 2004.
- 최대권. 「법과 사회」. 서울대학교 출판사. 1992.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30년사」. 서울 : 경인인쇄사. 1984.
- 해양경찰청. 「외국인 범죄수사편」 해양경찰학교 초급간부교재. 해양경찰청. 2006.

해양수산부, 「한중어업협정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규칙」. 행정기관업무  
참고용. 2007.

허경미.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1988.

## 2. 論 文

김대식. 「해상검문검색지침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종합학교. 해양경  
찰청. 2006.

김종선. 「해양관할권내 외국선박의 불법행위실태와 대응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형중. 「한국중세경찰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박용섭.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상보안관에 관한연구”, 「해양관리행정세미나,  
해양안전학회」, 해양안전학회. 1998.

박성준. 「해양범죄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해양경찰학교 교재, 해양경  
찰청. 2005.

이평현. “한·중·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해양관할권에 관한 고찰”, 「해양경  
찰학교교수요원 논문」. 2004.

## 3. 기 타

부산지방검찰청. 「해양범죄백서」. 1997

뉴스피플, 1997년 6월 18일자.

이운성. “주변국간 해양환경 현황 및 문제점 고찰”. 해양경찰학교 교수요원  
문제집. 해양경찰청. 2006.

윤중휘. . “코스트가드 특성”. 해양관리행정선진화 세미나. 해양안전학회.

모아북스. 새로운 통신혁명. 하이모리스 마케팅. 1998. 9.

진형인. “한국 해양력의 현주소”. 월간조선사 겨울호 2006.

조동오. 「USCG와 한국해양보안비교」. 한국해양관리세미나. 해양안전학회. 1998.

천창홍. “해상보안청 책무와 현상”. 해양관리행정세미나. 해양안전학회. 2003.

해양수산부. “한중일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행정기관 업무참고용. 2007.

해양경찰청. “해양경찰학교 초급간부교재 외국인 범죄수사편”. 「해양경찰학교

교재」. 해양경찰청. 2007.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해양경찰청. 200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해양경찰청. 2007.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실무지침서」. 해양경찰청, 2006.

해양경찰청, 「외국의 해양경찰제도 미국편」. 해양경찰청, 2000.

해양경찰청, 「한중일 비교법령집, 일본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법률」. 2003.

#### 4. 外國 文獻

海上保安廳. 「海上保安白書」. 大省印刷社. 2001.

日本海上保安廳. 「海上保安」. (2006).

法務省. 「犯罪白書」. 法務總合研究所. 2001.

Allan, R, New World Order Brings Chaos and crime in Many Countries.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vol. 9, no. 3

E.Osieke, Flags of Convenience Vessls : Recent Developments, AJIL, vol.73,  
1979.

G, Fitamaurice, Some Problems Regarding the Formal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Symbolace Verzigl 1958.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3, No. 2(Apr. 1939), CHUNG CHI  
CHEUNG v. THE KING, December 2, 1938,

#### 5. 인터넷

<http://www.lawnb.com>, (2007. 8. 10.)

[www.jejutoday.com/news](http://www.jejutoday.com/news), (2007. 7. 10)

[www.issuijeju.com/news](http://www.issuijeju.com/news), (2007. 8. 9.)

[http://newws, itines.co.kr](http://newws.itines.co.kr), (2007. 10. 1)

<http://lawnb.com/lawinfo/law>, (2007. 10. 1.)

<http://www.lawandbusiness.com>, (2007. 10. 1.)

## ABSTRACT

### A Study on Measures to Correspond to Criminals against Maritime Jurisdiction

Yang, Tea-Seub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Kuhn)

Alfred Mahan, a United States Navy officer and geostrategist in the late 19th century, suggested that whoever controls the ocean dominates the world, and to become a strong marine country requires six conditions such as geographical location, natural formation, vast land coverage, population, qualified nation and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Though South Korea is a traditionally maritime country surrounded with waters, however, the ocean has been taken lightly overpowered with development of the earth. With all those trades through marine routes, and attacks from other foreign countries, there has been no political measure.

Meantime, land-focused development, shortage of food resources, and environmental matters have led to reveal worldwide efforts to exploit the ocean and take charge more of it. In accordance with recent declarations of EEZ by South Korea, Japan, China to preserve their natural marine resources, forming marine blocks has been expedited and countries are battling over a

secondary land to secure marine traffic routes and to gather information necessary for competitive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the reality is that all the issues related to defence and foreign affairs including the order of the Northern East, the North's nuclear experiments, and the ROK-U.S. alliance rearrangement are being rearranged within the maritime jurisdiction.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21st century and marine traffic, and the structural changes of East Europe and Russia,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s are expanding worldwide with more intelligence, and via marine routes.

Marine-based drug trafficking, piracy, slavery transportation, and etc. have been considered anti-humanitarian; recently violation against fishery agreements and smuggling are newly emerging.

Marine crimes have three features : they are made in the expansive waters, their means are ships, and once they are made, their consequences are serious.

If we take a look into aspects of these marine crimes, we can numerate internationally organized gangs' piracy, Koreans' smuggling into Japan, Korean Chinese smuggling into Japan and South Korea, North Koreans' marine escape due to their nation's structural changes, Russians' smuggling camouflaged with fishery trade and employment. Though international crime agencies are corresponding to them, physical limitations such as its vastness of the ocean and weather changes and lack of information sharing between nations are making investigation difficult.

Marine crimes also have a tendency to respond to neighbouring countries' political situations sensitively. Futhermore, as far as South Korea concerned, with ideological conflicts of China, Japan, and Russia, escaping Northern Koreans to avoid starvation, airports linked to organized crimes, marine routes being adop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arth, such organized crimes are newly emerging as passport fabrication, illegal immigration, gun

smuggling, piracy, and terror, etc.

As marine crimes get organized and intellectual, present investigation system reveal its limitations. Here I suggest corresponding measures to six problems that our investigation agencies have.

**First**, T/F team for organized marine crimes is necessary. Considering characters of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eds to be upgraded to access information from abroad. and competitive investigation agencies equipped with professionals and equipment are required to be established.

**Second** is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investigation. It is desirable that investigation agencies that grapple with Korean fugitives abroad, foreign fugitives in Korea and hardened criminals cooperate each other.

**Third** is adopting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s, and fostering qualified policemen. To correspond to newly emerging crimes and international crimes, investigation methods need to get scientific, state-of-art equipment that suits features of crimes should be accessible, and trustworthy policemen who are intellectual about foreign affairs are necessary.

**Fourth** is strengthening functions of KCG. The agency is performing many missions as much as we can say that it is taking full charge of prevention of marine crimes and law enforcement against them. For better exchanges with other countries' marine law enforcement agencies,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of KCG should be promoted to foreign affairs bureau

**Fifth** i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anti-terrorism and business security protecting activities. In the midst of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conflicts of region, race and ideology, international terrors have often happened not only on land but also in the ocean to retaliate against each other. Therefore, to prevent marine terrors, surveillance of industrial products on passenger ships and cargo ships should be upgraded.

**Sixth** i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alition in criminal law. International

crimes are made on the ocean linked with organized criminals. To prevent this, each country is required to correspond, making a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ies. And for fast information exchange, coalition making the best of ICPO needs to be solidified.

It's time to mobilize all the resources for political support so as to make it possible corresponding to international crimes effectively by gathering information on newly emerging crimes, improving investigation system, and preserving horizontal relations among countries, and agencies for consistency in business.

